

소수자주거권확보를위한 틈새모임은 주거 관련 법제도와 정책이 여러 소수자의 주거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 8월 구성된 모임이다. 틈새모임에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타리 (전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제 목: 주거권과 가족상황차별 - 소수자 주거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발행처: 소수자주거권확보를위한 틈새모임

발행일: 2012년 4월 5일

작성자: 미류 이종걸 장서연 조혜인 진경 타리

연락처: 타리 taripink@gmail.com

보고서 소개와 감사의 글

소수자주거권확보를위한 틈새모임(이하 틈새모임)은 2010년 여름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는 35세미만 1인 가구 전세자금대출 불허 규정을 바꾸어보고자 집단민원을 진행하였고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기존의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발언할 필요를 발견하고 이미 주거권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 다양한 이유로 주거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이들의 단체와 함께 틈새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틈새모임은 청년 1인가구, 성소수자, 장애인, 비혼모, 이주민 등의 주거경험을 통해서 주거권을 위협하고 차별하는 요소가 어디에서 기인하고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소위 ‘소수자’들이 차별받는다고 하지만 주거권에서 차별이 드러나는 양상은 구체적으로 문제화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간 주거권 운동을 통해 세입자의 권리나 재개발의 문제, 서민주택 확보 문제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고,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주거권 확보의 문제를 차별과 연결시켜보는 시도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공급과 순환, 도시정비와 재개발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의 배분, 배분의 우선순위, 주거환경에서의 차별적 요소, 안정감과 소속감, 의사결정권과 같은 좀 더 넓은 의미의 주거권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틈새모임은 11명의 인터뷰와 주택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권기준의 참고 등을 통해서 소수자 주거권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가족상황차별’개념에 좀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주택공급의 단위가 ‘가족’이라고 전제되어 왔기 때문에 가족상황차별을 겪고 있는 집단은 대개 주거권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주택을 공급받을 때 배제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있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에서 의사결정권에서 배제되거나 불안

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가족의 계급 재생산의 주요 경로로 여겨지면서 계층에 따라 가족과 주거의 상황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위에서 언급한 의도에서 주거권의 범주를 좀 더 확장하고 비가시화된 주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자하는 틈새모임의 바람을 담았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가까이 인터뷰를 해주신 11명의 인터뷰이들과 이를 지원해주신 이주여성인권센터, 청년유니온,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고서 제작에 후원해주신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와 장애여성공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1년 11월 24일에 열린 “소수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워크숍 - 가족 상황차별 함께 고민하며 주거권의 새로운 의제 찾기”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언니네트워크/가족구성권연구모임, 동성애자인권연대, 마포 민중의집,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지하사는여성들의 모임 ‘반만올라가면 일층’, 신촌민회, 장애여성공감, 청년유니온,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 틈새모임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보고서에 담지 못한 다양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때 토론자료는 이 보고서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5
1.1 보고서의 목적	5
1.2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주거와 가족	7
2. 주거권과 차별	11
2.1 살만한 집에 살 권리	11
2.2 주거권의 내용	13
2.3 주거권과 차별금지	16
3. 주거 정책 검토	19
3.1 주거정책의 정상가족중심성	19
3.2 소수자들의 주거상황	22
3.3 주거복지 정책과 소수자	27
3.4 쉼터, 시설, 고시원 등 임시적인 ‘생활공간’의 현황과 문제점	31
4. 가족상황과 주거권에 대한 경험적 고찰	36
4.1 인터뷰어의 특성	36
4.2 ‘가족=주거’, 그런데 모두가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38
4.3 ‘집’의 도움 없이는 집을 구할 수 없다	46
4.4 유일한 주거대책? 미래를 도모하기 어려운 공간	54
4.5 주거상황을 위협하는 시선	59
4.6 허용된 장소의 열악함과 삶의 제한	62
5. 결론을 대신하여	70

1. 서론

1.1 보고서의 목적

틈새모임은 기존 주거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누구나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차별’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주거의 문제 또한 계급불평등의 문제이며, 특히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이 계급의 세대 재생산에 기여하고 강화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고 여겼다.

소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정책이 마련되고, 제한적으로나마 임대주택 정책이 시행되고 주거복지제도가 생겨났지만 대다수 서민들의 세입자 처지를 개선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재개발로 인해서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철거민들의 처절한 투쟁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본권으로서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밑바닥의 논의부터 필요하다. 최근 발의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동시에 다양한 소수자들의 주거경험이 드러나고, 차별을 해소하는 것 또한 주거권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로 여겼다. 공공주택정책의 양을 늘린다고 해도 어떤 기준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소수자의 경험이 인정되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배제와 비가시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임대주택공급이나 전세자금대출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틈새모임은 이러한 소수자의 주거권 의제를 드러내고, 주거권과 소수자 운동을 하는 이들과 좀 더 고민을 심화시켜보고자 보고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보고서의 핵심적인 개념에는 ‘가족상황차별’이 자리잡고 있는데, 소수자의 주거권을 의제화하는데 가족상황차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 이유는 소수자들이 주거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의 원인이 가족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1인 주거는 가족이 아니라서, 혹은 가족을 구성하기 전 임시적인 거주니까 정책적인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결혼이주여성은 신분과 거주 문제 모두 가족 상황과 긴밀하게 관련이 되고, 비혼모 또한 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족 상황과 관련된 차별과 깊이 연관되고 있다. 성소수자는 파트너와 가족으로 정책적, 문화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공동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장애여성 또한 생활공간에서 결정권을 지키거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들은 현재의 주거정책이 가족제도에 기반 하여 설계되고 분배되고 있는 것, 부동산이 계급의 세대적 재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서 원가족의 도움 없이 살만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진 사회라는 것, 정상가족 규범에 의해서 가족 내에서 작동하는 권력과 위계로 인해 소수자들은 많은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공간에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 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이 점들이 소수자들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비규범적 가족형태라는 이유로 이웃이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별없는 공간,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 또한 주거권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의제라고 할 수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거권과 가족상황차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집과 가족의 관계, 역사적인 가족형태를 반영하는 집의 변형, 이를 반영하고 형성하는 정책의 변화 양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1.2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주거와 가족

○ 집과 가족의 관계

집의 의미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의 의미는 ‘가족이 함께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역으로, 가족에 대한 의미도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 할 의식주 중에서 ‘주(住)’는 특히 한국사회에서 가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브랜드 아파트 광고에 나오는, 남편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부인이 식사를 준비하는 식의 ‘정상가족의 이상적이고 화목한 모습’은 한국사회에서 ‘집’이 지향하는 가치를 보여준다. 중산층의 투기/재산으로서의 부동산은 서민들에게 비판하는 동시에 간절히 바라게 되는 대상이었고, 집의 가치는 항상 가족의 가치와 함께 ‘이상화’되어 왔다. 집에 대한 가치만큼, 집의 형태와 구조도 가족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함께 변화해 왔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가족 형태에 따라 변화해온 집의 형태는 어떠한가? 조선시대부터 유교적 관습이 강하게 자리 잡은 한국은 친족 중심의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마을 자체가 ‘큰 집’이라고 할 정도로 친족들이 모여서 살았는데, 마당이 있고 마당을 중심으로 여러 채가 있는(별채, 안채, 사랑채, 행랑채)형태였다. 하지만 당시에든 계급적 상황에 따라서 가족-주거의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상류계층은 큰 집에서 많은 친척들이 같이 살고, 몇 대가 함께 사는 확대가족 형태의 ‘대가족’이었다면, 좁은 공간에서 살아야했던 평민 및 하류계층은 부모-자녀로만 이루어진 핵가족 형태이되, 자녀가 많은 ‘대식구’라는 차이가 있었다.

그 후 근대에 접어들고, 서구 문화가 유입되었으며 일제시대에는 ‘문화주택’이 신식 주택의 대명사였지만 서구의 핵가족 형태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당시 한국의 대가족 형태와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겼다.

한국에서도 1930년대에 이미 4인 이하 가족비율이 전체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했는데, 이는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가구가 분화하면서 가

족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 개량한옥이 도시의 소가족에게 맞는 형태로 활발히 보급되었다.

전쟁 이후 1950년대 말~1960년대 초에 보급된 ‘국민주택’은 본격적으로 중산층 핵가족을 타겟으로 만들어졌다. 전쟁 기간 동안 많은 주택들이 파괴되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도시는 심각한 주택난을 겪었다.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한주택공사의 전신인 대학주택영단에서 1957년부터 단독주택 혹은 연립주택 형태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국민주택은 기본적으로 거실과 방 3개와 부엌, 화장실/목욕실 등을 배치한 형태였는데, 건축사제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많았고 서구의 주택 개념을 도입해서 특히 부엌과 화장실의 수준을 높였고, 생활공간으로서 거실이 등장하면서 서구적인 주거 생활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주택의 건설로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근대 사회에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이 늘어나고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분화되면서 가구 수가 늘어났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던 것이다. 그러면서 부모+ 자녀들만 사는 핵가족의 생활양식에 어울리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늘어났다. 따라서 1970~1980년대 핵가족의 주거형태로서 아파트가 확산, 발전해갈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독신 가구를 비롯해 비전형적인 가구가 증가했다. 관련 연구자들은 여성의 경제적 활동,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혼과 재혼의 증가, 출산율 하락, 개인주의의 확산 등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집의 형태가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의 형태, 규모에 따라서 계속 변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급속화 된 경제성장의 시기와 맞물려 ‘중산층 핵가족’이 주택 시장의 핵심 타겟이었으며 그들을 위한 주택 보급, 그들을 위한 주택 정책을 고민해왔다. 하지만 핵심 타겟은 있을 수 있다 해도, 정착 문제는 그러한 핵심 타겟 외의 사람들을 위한 집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양식과 필요에 전혀 맞지 않는 집에 억지로 맞춰 살아야 했거나 조금이라도 맞는 집

을 찾아 헤매야 했다는 것이다.

○가족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주거정책

가족의 변화를 주택 정책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적으로 마련되는 주택 정책은 어떤 가족생활을 장려하고 이끌어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와 형태가 변화했다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다. 기존 부부-자녀 핵가족 형태는 사라지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가족구성도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통계와 연구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이야기되었다.

하지만 그런 변화를 정책은 따라가고 있는가? 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다.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가진 한계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도 소형 주택 공급이 늘어나기 보다는 오히려 대형 평수의 아파트 공급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그나마 수도권에 남아있는 소형 주택인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도 재개발/뉴타운 때문에 사라져 가고 있다.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나 규모별 주택 공급의 배분에 있어서 다양한 수요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공급 물량만 늘린다고 해서 현재의 주택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1인가구의 확산을 ‘지나친 개인주의의 문제’ 혹은 ‘가족의 붕괴’로만 이야기하는 흐름도 문제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은 외면하면서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확대, 신혼부부 아파트 우선 공급 정책들을 보면 정상적인 가족을 이루려하거나 정상가족을 이룬 사람들에게 초점

을 맞춘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주택 문제조차 ‘저출산 현상의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주거권과 차별

2.1 살만한 집에 살 권리

한국사회는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편이다. 재산으로서의 집이 권리 분쟁에 놓이는 경우는 많지만 거주 장소로서의 집에 대한 권리는 거의 보호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는 늘 재산권 침해라는 비난에 공격당하고, 임대차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지는 주장 역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부딪쳐 침묵 당한다. 한국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의에서 용산참사가 강제퇴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해서 유엔 사회권위원들을 당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주거권은 오랜 시간 동안 자리잡아 온 권리 영역이다. 집은 투표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고, 전쟁이나 점령 시기에도 함부로 파괴되거나 몰수되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집은 위생과 건강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굶직한 사회적 의제였다. 이는 유엔 사회권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규약)을 만들던 당시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거권은 사회권규약 11조에 명시되어 있다. 사회권규약 11조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 의식주에 대한 권리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성안하던 당시 주거권을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어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과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토론되었다. 누구도 주거를 권리로서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논쟁 끝에 주거권은 별도의 조항이 아니라 다른 권리들과 함께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로 포함됐다. 물론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권리로서 주장되는 것을 제약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지만 주거권이 명시되었다는 것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주거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였고 이에 대해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권리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개인의 안전이나 프라이버시와도 관련이 높으며,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집이 없는 채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기는 어려우며, 아동의 교육과도 관련이 높다. 사람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사노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물론 집은 온전히 사적인 공간만은 아니며 수많은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집을 재산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주거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권력관계의 작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살펴보는 데에 도움을 준다.

2.2 주거권의 내용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4: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바탕으로 주거권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거주가능성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거주가능성(habitability)이다. 주거환경이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은 물리적 안전과 신체적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기후로부터 인간의 생리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온도나 습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 요인 중 주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익히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햇빛이 적당히 들고 바람이 적당히 통해야 한다. 거주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환경도 질병 발생의 위험을 높이므로 적당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화재나 수해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적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집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 서비스를 갖춰야 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상수도로 공급되어야 하고 전기나 난방 에너지 등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몸을 씻거나 취사, 세탁 등이 가능해야 하고 식량을 보관하거나 조리할 수 있는 시설, 각종 쓰레기나 오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도 확보되어야 한다.

○ 공공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한편, 집은 저홀로 떨어져 있는 개인적 공간이 아니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 기반이 되며,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여러 시설이나 서비스와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는 주거와 노동, 교육, 의료 등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분화되어 있는 만큼 직장이나 학교, 병원, 도서관, 문화시설, 시장 등과의 거리도 주거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를 위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보장되어야 한다. 실제로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눈여겨 살피는 것 중 하나가 위치다. 각종 필수서비스와 편의시설들이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하는 반면, 오염원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식수나 대기를 오염

시키는 공장과 가까운 주거는 적절한 주거로 볼 수 없다. 또한 집은 해당 사회의 문화와 역사가 반영된 양식이기도 하며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택의 구조나 양식이 문화적으로 적절할 것도 요구된다.

○ 점유안정성

이러한 집이 현실에서는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 정도에 따라 분배된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보다 이사도 많이 다녀야 한다. 그러나 주거비나 점유의 안정성 역시 주거권의 주요한 내용이다. 권리로써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집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점유를 기본적 속성으로 하는 장소다. 집을 옮기는 것은 잠자리가 바뀐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를 다르게 구하게 되는 것이고, 하루의 일상이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며,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과 기회가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내 쫓기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당연하게도 이것은 집의 소유 여부나 건물의 합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이러한 권리가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 강제퇴거로, 강제퇴거는 국제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로 다루어진 역사가 오래됐다. 그러나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집주인의 요구 등으로 점유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 주거비의 적절성

주거비 역시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주거권의 요소로 접근해야 한다. 주거를 누리기 위해 일정한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이 기본적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집 한 채 있다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한 것이다. 먹을 것, 입을 것에 들어가는 비용, 교육비, 의료비 등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제한될 정도로 주거비 부담이 있다는 것은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비용, 주택 관련 대출을 갚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 모두 그렇다. 시장을 통한

주택 구입만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버린 현대 사회에서, 주거비 부담을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비 보조나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료 규제, 저렴한 사회주택의 공급 등을 국가가 수행해야 한다. 집값이나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주거권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2.3 주거권과 차별금지

비차별의 원칙은 '인권'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권리를 관통하는 원리다. 주거의 이용이나 공급에서도 차별은 없어야 한다. 주거권에 대한 일반논평 역시 이를 주거권의 주요 내용으로 설명한다. 모든 사람이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적절한 주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나 피부색,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하는 직접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무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차별들도 사라져야 한다. 정상가족만을 모델로 주택정책을 설계해 동성애자나 비혼 가구가 주택정책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본 보고서는 주거권과 관련하여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이유로 주거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이란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의 권리를 포함한 가족의 형태, 가족의 구성과정, 그리고 가족구성원 및 가족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가족'이란 혼인과 혈연을 통해 맺어진 관계처럼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보다 폭넓은 파트너십과 돌봄의 관계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이란, 이혼, 사별이나 비혼,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공동생활가족, 단독가구(1인가구), 그룹홈 및 위탁가정, 동성커플가족(동성가족)처럼 가족의 형태, 가족의 구성과정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 및 가족에 대한 부양, 돌봄, 지원, 가족 유대 형성, 경조사 의무 등의 책임과 관련한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흔히 사회권은 자유권과 달라 즉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권 실현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쉽게 방기된다. 이에 대해 '사회권규약 이행에 관한 뤼머그 원칙(1986)', '사회권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1997)'은 국가 의무에 기초한 대안적 접근방식을 밝히고 있다.

인권규약의 당사국은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를 진다. 당사국은 개인

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의 입법, 사법, 행정에 걸쳐 차별적 조치가 있거나 주거권을 침해하는 조치가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이 스스로 개인이나 집단을 강제되거나, 주택공급이나 주택금융의 이용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보호할 의무는, 당사국이 아닌 다른 행위자가 개인이나 집단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적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주택의 임대차나 금융의 이용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나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집주인이 부당하게 임대를 거부하거나 임대료를 부당한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퇴거를 요구할 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실현할 의무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의무다. 모든 사람들이 살만한 집에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사회주택을 공급하거나, 토지, 주택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들을 시행하는 것, 도시계획이나 개발 사업이 공공의 책임 아래 지역 주민들의 인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이러한 의무에 해당한다. 일부 국가들에는 주택에 대한 청구권을 명시하는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다. 일정한 목표 기간을 정하고 가장 취약한 집단부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점차 모든 사람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을 밝힌 것이다. 흔히 사회권은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예 권리적 성격을 부정당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로나 방식은 다양하다. 국가의 주거권 실현 의무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또한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 것 역시 국가의 의무다.

사람들이 주거권을 누리는 데에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차별을 시정하는 것 역시 국가의 중요한 의무다. 특히 차별금지에는 "즉각적인 효력이 있고 전체를 관통하는 의무"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차별금지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면서 규약 상 권리에 대한 평등한 인정, 향유,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훼손하는 의도 또는 효과가 있는, 모든 종류의 구별, 배제, 제한, 선호, 기타 차별적 대우"와 "차별 선동과 괴롭힘"은 금지되어야 한다. 당사국의 법률이나 정책이 공식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차별을 발생시키거나 존속시키는 조건과 태도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주거권과 관련해 차별을 살필 때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물리적 주택의 공급이나 조건에 그치지 않는다. 주거권이 물리적 요건에 한정되지 않듯이 차별 역시 주택이라는 재화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엄하다는 선언에 따르는 사회적 약속이다. 따라서 각각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권리들은 사실상 서로 나뉘질 수 없고 긴밀한 상호연관과 상호의존성을 띠고 있다. 그것은 모두 인간의 '존엄', 즉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를 향해 있다. 다양한 정체성이나 사회적 조건들이 주거를 누리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살피는 것은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 각자가 처한 상황들이 다만 안타깝거나 서러운 상황이 아니라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의 전환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주거 정책 검토

3.1 주거정책의 정상가족중심성

소수자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족상황차별의 문제와 함께 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주거정책이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정상가족중심성을 전제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 이유는 주거 정책이 주거기본권이라는 원칙 아래 정립되었다기보다는 인구정책이나 경제부양정책으로 수단화되어온 것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정책은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경쟁력이나 정체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부여됨으로써 규범화 되어왔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모델이 변하고, 남성가장이 자녀를 부양하는 4인 가족 모델이 규범화되면서 주거정책은 그것을 뒷받침 하는 물적 토대로 작용하는 성격이 있었다.

문제는 주택이 계속해서 “4인 가족의 내 집 마련”에 맞춰 공급되고 있고, 내 집 마련은 곧 ‘주택구입’에 맞추어져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부채 증가에 따른 몰락을 가져오고 있다. 아래는 정부가 제시하는 가구생애주기이며, 이에 따라 주택공급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건설사 배불리기와 시세차익을 노린 계층상승 욕망에 따른 재개발 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 외에도 더 이상 이러한 생애주기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살아가지 않는 많은 계층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생애주기를 가정하고 기본권에 해당하는 주거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분	특성 및 내용
가구 형성기	31세: 결혼(평균 초혼 연령: 30.6세) -소득증가 -출산
가구 성장기	39-40세: 주택구매(결혼 후 주택구입: 평균 8.6년 소요) 40대 초중반: -교육비 증가 -소득증가 -주택구입 용자액 증가 -저축 증가

가구 안정기	47-50세: 주택의 교체(주택 구입 후 평균 8.5년) 56세: -퇴직 -자녀출가 -교육비 부담감소
가구 쇠퇴기	60세 이상: 주거면적 감소 - 소득감소 -가족축소

특정한 생애주기, 정상가족규범, 계층상승의 욕망이라는 세 가지가 맞물려서 진행되어왔던 현재의 주거정책은 내 집이 없고 다른 생애주기를 겪거나 가족 제도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장애, 인종, 성적지향, 나이,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계급재생산이 유지되고 재생산 되는 현상이 규범적 집이며 그것이 ‘해체’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으로 이해한다. 복지/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결혼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있고 집을 마련하거나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에도 정책적인 개입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잔여적인 형태로 한정된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해서 도입했다고 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정책에서 중요한 대상은 1~2인 가구의 세입자가 아니라 이들로부터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이다. 따라서 ‘중계업자’로서의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료가 적정하지, 세입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민우, 이나영¹⁾은 “‘정상적’ 생애과정의 트랙을 따르면서 그 생애단계에 적합한 공간으로서 규범적 ‘집’을 획득해나가는 이들과 이를 이탈한 이들의 범주는 존재론적으로 구획된다. 가족-이성애-재생산 제도에 부합하는 주거공간(영토)을 점유한 이들은 적합한 시민의 범주 안으로 포섭되나, 젠더와 연령의 규범에 적합한 시공간성의 관리와 운영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들은 재현불가능한 존재, (재현되더라도) 해석불가능한 존재로서 시민의 범주 밖으로 배치된다”고 비평한다.

1)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성별화된 독립과 규범적 시공간성”, 경제와사회 2011년 봄.

안정된 주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시민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주거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고, 어떻게 구하고 점유하며, 어떤 이유로 이동하고 밀려나는지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양식과 정체성, 사회적 지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드러나지 않거나 주변화 된 사람들의 권리는 재현되거나 대표되기 어렵다. 한국사회는 결정적으로 집의 소유자가 드러나고 그곳엔 그들의 혈연가족이 함께 존재한다고 믿을 뿐이다. 하지만 특정한 주거공간에서 어떤 행위가 규제되고 금지되고 혐오의 시선을 받는가를 보면 차별을 좀 더 문제화할 수 있다.

소수자들의 주거경험을 말하기 위해서 집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이야기가 필요하다. 사실상 집 없는 상태(홈리스)에 놓이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이나 홈리스 개념과 맞물려 좀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홈리스에 대한 확장된 정의(노숙인-노숙인 시설-쪽방/고시원/PC방/사우나-불안정하고 임시적인 거주형태)를 두고 경제적 빈곤과 함께 다양한 차별의 형태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 노숙인의 성별과 가족 내 지위는 노숙의 동기와 기간, 형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 인종,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홈리스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으며 그것은 가족상황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²⁾

2) 여성홈리스 경험에 대해 연구한 김두나에 따르면 여성의 홈리스화는 이혼이나 가출, 실직 등과 같이 어떤 한 시점의 특정한 생애사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성 차별적 가족구조 및 노동시장구조, 사회복지제도 안에서 여성들이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하는 차별로 인해 자원에 대한 통제권 및 권력을 상실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연구에서 다룬 여성홈리스 경험을 보면 대부분 집에서 바로 노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쉼터, 찜질방, 친구집, 친정집, 교회, 직장 내 숙소, 정신병원, 쪽방, 고시원 등을 두루 경험하게 되며 노숙이 최종의 장소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성폭력의 위험을 경험하게 되며 제도적 지원에 접근하는 과정에서는 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어머니이자 아내로서의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김두나, 「기혼여성의 홈리스(Homeless)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7. (미간행))

3.2 소수자들의 주거상황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청년1인가구, 장애여성, 비혼모, 이주민, 성소수자와 관련된 주거의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 청년 (1인) 가구

인구성장세 감소와 가족구성의 변화와 함께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져 1인 가구는 현재 23.3%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 결과) 마포구 일부지역의 경우 40%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도 2030년에는 23.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 결과 서울 838,114명, 경기 751,520명의 1인 가구가 거주하여 전체 4,039,186명의 1인 가구의 약 4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층의 독립에 대한 욕구, 결혼을 미루거나 비혼을 선택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청년이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대량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득 확보, 저축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주택정책에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제도의 변형은 주거복지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가구추계에 의하면 고령층 가구주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2000년 12.1%→2020 22.3%), 30~50세 가구주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2000년 70.7%→2020년 60.7%)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분양주택 공급 위주의 정책이 더 이상 정당성이 없다는 지표이며, 소득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도시지역 거주비율이 높은 29세미만 청년층 1인가구는 다가구주택, 임차의 거주비율이 높고, 비도시지역 거주비율이 높은 노인가구는 일반단독주택, 자가비율이 높는데 (1인가구의 74.5%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 1인가구는 최근 고용불안의 증가와 함께 고시원,

반지층 등 열악한 거주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1인 가구의 빈곤화 역시 두드러지는데 1인 가구 평균 소득은 91만원으로 일인가구 평균소득인 249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2009년 1인 가구의 3분기 명목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나 줄어 1인 가구 소득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또 3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 감소율이 -2.2%인 것과 비교하면 경제불황으로 인한 타격이 1인 가구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소득 수준에 비해 주거비 지출 비중은 크게 높아 1인 가구 주거비 지출은 20%대로 전체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인 10%에 비해 크게 높고 주거비 부담이 큰 보증부 월세 비중은 2000년 20.0%에서 2009년 27.4%로 증가했다.

○ 비혼모의 주거상황

우선 비혼모를 위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비혼모는 비혼모로서의 삶을 결정하면서부터 이전의 원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상황과 단절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자원이 없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긴급하게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청년층이 자력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한국사회에서 원가족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혼모의 경우 주거마련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거주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족원 수를 통해 가산점이 매겨지는 임대주택의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비혼모의 경우 이용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양육과 생계활동을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많아 높은 월세임대료가 생계를 꾸려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며, 비혼모에 대한 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생활하거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 장애인의 주거상황

2000년대 이후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이 활발해지고, 독립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책 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주거문제에 대해 최초로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져 만들어진 자료³⁾에 따르면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커 상대적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앞으로 주거 불안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장애여성 주거권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⁴⁾에 따르면 물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장애여성의 독립에 있어서 사생활이 보장되고 있는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가, 함께 사는 이들 가운데 의사결정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가,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어떠한가, 주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 안전이 보장되는가 등에 대한 내용이 주거 상황에 포함되어야 하며 많은 장애여성의 경우 이러한 지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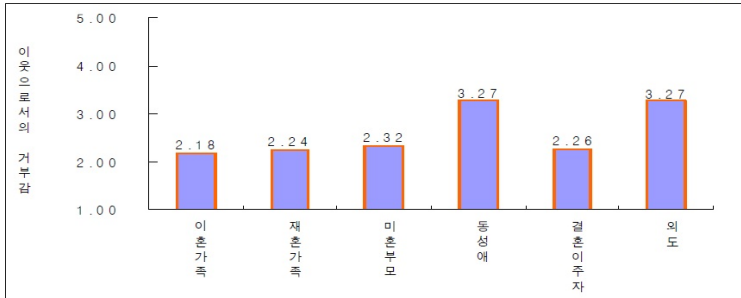
○ 성소수자의 주거상황

성소수자의 경우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 상황이며, 가족구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에서는 1인 가구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소수자의 경우 경제적 상황에 따라 물리적 거주 형태는 천차만별이지만 성정체성으로 인해 원가족에서의 차별과 폭력, 강제적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

3)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선 본 장애인 주거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국회의원 최규성 ; 국회의원 신영수 [공동]주최, 2010. 9. 27.

4)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자료집,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습], 2009, 11, 27.

(단위: 점)



주: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감이 큼

[그림 6]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웃으로서의 거부감

위의 그림을 통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웃으로서의 거부감에 대한 사회인식을 볼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감이 크며 5점은 ‘이사 가도록 요구하겠다’이고 1점은 ‘집안끼리 교류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동성애자가 가장 큰 거부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 이 자료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웃으로서 거부하는 정도가 심한 것을 볼 때 성소수자가 임차해서 이웃으로 생활할 경우 때 주위에서 받는 차별로 인해 주거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 이주민의 주거상황

이주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최장 5년까지 체류하게 되는데 본국에서 주거에 대한 내용까지 고용계약에 포함시켜 계약을 하고 왔으나 한국에서 회사 기숙사비를 따로 징수하여 최저임금마저 어기게 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퀸테이너 형태도 많음)에서 기거하거나 화장실과 부엌이 없는 주택에서 살고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김금래 주최, 52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 2009.

점유 형태로 보면 보증부 월세와 월세가 60퍼센트를 넘었으며, 전세는 0.9퍼센트에 불과해 주거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저 주거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전체 외국인 가구의 14.6퍼센트가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평균의 10배에 해당한다.⁶⁾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배우자인 한국남성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주거 상황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가족내 결혼이주여성의 지위와 가족구성원들의 인식에 따라 동등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울수도 있다. 또한 가정 폭력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와 분리되게 되었을때 주거상황이 극도로 열악해 질 위험이 있다.

○ 청소년의 주거상황

청소년의 경우 당연히 보호자(부모 등 부양과 보호의 주체)에 의해 주거가 제공되는 것으로 전제되고, 정책적으로도 소년소녀가장 주거지원이나 기출청소년에 대한 일시지원 등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일시적인 기출이 아니라 탈가정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자력으로 주거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구조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나이에 대한 법적 기준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가족상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누구와 같이 살 것인가, 혼자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청소년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전부터 한국사회에서는 학업을 위해 청소년이 혼자 기거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던 것을 떠올린다면 단지 공간적인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한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간적인 독립을 결정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질문이다. 단지 친권자에 의해 가해진 학대나 성폭력 등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유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주거공간과 가족상황에 대해서 청소년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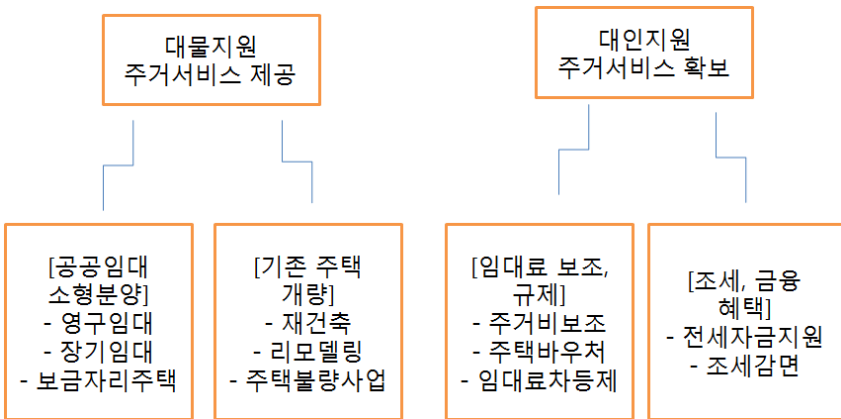
6) 대한부동산학회, 하성규·고성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실태에 관한 연구」, 2006

3.3 주거복지 정책과 소수자

현재 주거복지 정책은 크게 대물지원과 대인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대물지원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분양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등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대인지원은 주거비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청년 1인 가구를 비롯해 소수자들에게는 이러한 주거복지 정책 또한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상황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주거복지제도의 구조>



○ 대물지원 정책

대물지원 정책에 있어서 임대주택 공급을 살펴보면 1인 가구에 대한 신청 제한, 청약 제도 가점제로 인해 1인 가구를 비롯해 가구원 수가 적거나 사회적 조건에 따라 한 곳에 정착하기 어려운 비혼모, 성소수자, 탈시설 장애인 등은 불리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임대주택 유형별 1인 가구 신청 가능 여부>

	1인 가구(단독 세대) 신청 여부	비고
SHIFT 장기 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중형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신청 불가.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상당부분이 장기전세주택임. (총 임대주택 2만 1118호 중 장기전세주택은 약 1/3인 7628호)	*청약제도의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
LH 보금자 리주택 (국민임대)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39㎡만 신청할 수 있음.	분양하는 제도임. - 부양가족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
LH 보금자 리주택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민간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단독세대주의 입주가 가능한 40㎡ 이하의 공고임대주택은 거의 공급되지 않음.	약통장 가입기간(17점)

<선진국 공공임대주택의 규모(전용, m²)>7)

구 분	영국	독일(괄호는 건설 할당률)	프랑스	일본
비 율	평균 62	1인 : 45 (10%)	가구원별로 18 ~ 114	공영주택 19 ~ 80, 6인이상시 85까지
		2인 : 55 (25%)		
		3인 : 70 (45%)		
		4인 : 85 (25%)		
		5인 이상 : 1인당 15씩 증가 (5%)		

* 영국의 경우 대차집권이후 공공임대주택 불하로 양질의 중대형평형 주택은 매각

7) 국토해양부, 임대주택업무편람·매뉴얼, 2008.

또한 다양한 사유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소수자들이 임대주택 쿼터제를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도 고민해야 한다. 각 그룹에서 10%를 주장하는 방식을 상대적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주거권을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쿼터제를 주장하는 그룹 중에서 누가 더 시급한가를 경쟁하거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도 어렵다. 그것은 이미 소수자를 주거권에서 배제해왔던 논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유일한 대안은 주택정책의 기초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개발정책의 수단으로 부동산 재개발을 이용하고, 사회안전망 대신 건물소유를 통해서 노후를 마련하도록 만들고, 자가 소유를 하도록 만드는 주택 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국토해양부가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는 준주택은 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1~2인 가구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국 예산은 임대사업자에게 지원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일부 언론에서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는데, 4인 가족 중심의 집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민간에게 공급을 맡기는 순간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건설업자는 더욱 배를 불리게 되고, 임대료 상승은 볼 보듯 뻔하다. 때문에 도시 거주 저소득 1~2인 가구와 여관을 비롯해 고시원, PC방, 만화방 등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주거환경에 놓인 계층을 위해서 소형 임대주택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

○ 대인지원 정책

대인지원 정책 중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비 보조정책은 2009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를 전체 수급자 882,925 가구에서 보장기관 제공 거주자(시설입소인 등), 그룹홈 거주자, 기타 가구(비닐하우스, 무허가주택 등)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로 추정해보면 전체 수급자의 약 67%인 592,323가구가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이전에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 급여와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를 통하여 최저주거를 보장하였으나, 2008년 개정을 통해 주거급여는 정액지급에서 정률지급으로 개편되어 해당 가구의 20.6%에 해당하는 급여가 주거급여로 지급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진 소득인정액 산정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진 문제로 인해 수급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주거마련 도움에 큰 기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⁸⁾

또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 정책을 보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무주택 저소득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형 이상 승용차 및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이태진 외, 2010). 그런데 전세자금대출 정책의 경우 35세미만 1인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청년 1인가구와 비혼자를 차별하고 있다. 또한 정책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운영을 은행에서 하다보니 과도한 신용보증을 요구하거나 집주인의 동의를 얻게 하여 임차인으로서 이미 편견을 받고 있는 소수자의 경우 이중 삼중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8) 이태진 외,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주거급여 시행 10년-」, 보건사회연구원, 2010.

3.4 쉼터, 시설, 고시원 등 임시적인 ‘생활공간’의 현황과 문제점

쉼터, 장애인, 비혼모 등을 위한 체험홈이나 생활시설, 고시원 등 각종의 생활 공간은 집일까, 이는 주거정책안에 포섭되는가, 이러한 공간에 무엇을 요구하고 비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생활공간의 몇 가지 예시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주거의 위기적 상황에서 주어지거나 소수자를 위해 마련된 생활공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 장애인을 위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장애인을 위한 체험홈은 탈시설의 흐름에서 기존의 대규모, 미신고, 고립적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이 독립을 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임시적으로 제공되는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강력한 탈시설 및 자립생활운동의 영향으로 서울시는 서울복지재단을 통해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체험홈은 2011년 기준으로 20개소가 있고 1인 1실을 원칙으로 3~4인이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주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하다. 이곳에는 서울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중 자립생활 희망자가 들어갈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주로 자립생활센터나 시설 운영법인이다. 자립생활가정은 총 9개소가 운영 중이며 1곳당 거주인원은 2명이다. 기본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자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에서 퇴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부여하며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한다.

또한 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체험홈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지자체에서 체험홈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체험홈이 몇 곳인지에 대해서는 통계로 정리된 바가 없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체험홈은 6곳, 부산은 5곳 등이다. 2008년 기준으로 전국의 장애인 체험홈이 14곳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는 약 35개~40개 정도로 추정된다.

○ 폭력피해여성 쉼터

폭력피해여성쉼터는 총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로 인한 상황으로 구분된다. 먼저 성폭력피해여성쉼터는 2011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9개소가 있으며 전체 199명이 거주하고 있고 최대 2년 동안 머물 수 있다. 가정폭력피해여성 쉼터는 전국 64개소에서 1,114명이 거주가능하며 단기 쉼터의 경우 6개월(3개월 연장가능), 중장기 쉼터의 경우 1년(최대 2년)동안 지내는 것이 가능하다. 성매매피해여성쉼터는 성인을 위해 27개소, 청소년을 위해 14개소가 있고, 성인은 1년(6개월 연장가능), 청소년은 19세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 비혼모 지원 시설

넓게 보았을 때 비혼모를 위한 시설은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이라는 형태의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참고로 부자보호시설1개소, 부자공동생활가정 2개소가 별도로 존재한다.) 여섯 종류의 형태 모두 거주기간은 기본 2~3년에서 3~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자시설로 구분되는 앞의 세 가지 종류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미혼모자시설이나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거주가 가능하다.

미혼모자시설이나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은 1~2년에서 최장 1년 6개월~3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미혼모의 출산과 숙식보호, 자립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하고,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은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의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한 시설”로 안내된다.

다른 생활시설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은 특히 임신과 출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비혼모에게 출산 후 대개 2년 정도까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은 제공되기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시설에서 거주하는 동안 사실상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

워서 시설 거주기간이 끝나고 바로 다음 주거가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적절한 소득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어질 경우 생계비 지원 이외에 다른 소득을 구할 수 없게 되므로 끊임없이 주거비에 대한 위협적인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1인 가구 임시거주형태 현황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시주거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주거정책과, 임시주거정책은 아니지만 1인가구의 임시주거공간으로 광범위하게 기능하고 있는 고시원 등이 1인가구와 관련된 임시거주형태라고 할 수 있다.

쪽방 거주민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해서 시작됐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최근 여관, 여인숙, 고시원 거주민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고시원 3개월 이상 거주 요건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원 수, 세대주의 나이 등에 가점이 부여되어 현실적으로 이 보고서가 살피는 1인가구의 입주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인다. SH 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을 그룹홈 형태로 시설에 제공하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활의 집(전세보증금 최장 6년 지원)이 있으나, 물량이 매우 적고 단신가구보다는 다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전세임대주택 등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넣지 못했다.

‘노숙인’은 이 보고서가 살피고 있는 1인가구와는 다른 집단이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현재 한국의 노숙인 관련 정책이 홈리스 관련 정책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노숙인들 역시 대부분 1인가구라는 점을 감안해 노숙인 쉼터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집단생활시설에 가까운(200~1,500명 규모의 수용 시설) 부랑인복지시설은 제외⁹⁾했고, 상담보호센터처럼 실질적인 주거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시설도 제외했다. 물론 노숙인 쉼터는 기본적으로 1인 1실이

9) 그러나 현재 노숙인쉼터와 부랑인시설이 다른 정책이라기보다 무엇으로 이름 붙이는가의 차이만 있다. 노숙인쉼터 중에도 수백 명 수용 규모의 쉼터가 있기는 하다.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시주거라고 보기에 어렵기는 하다. 현재 전국에 75개소, 서울에 38개소가 있고, 서울의 경우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는 3개소, 여성가족쉼터는 4개소밖에 안된다. 거주기간은 6~18개월이며, 자격요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운영주체들이 내부적인 기준을 두기도 하며 운영주체는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개인신고시설로 구분된다.

한편, 고시원은 주거공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실제로 고시원의 주거 기능이 높아지면서 건축법에서도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적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고시원의 주거 기능을 없애야 하면서 동시에 적당한 조건을 갖추어 1인가구를 위한 임시주거정책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수도권에는 2008년 기준으로 4,495개소가 있고(전국통계는 없음), 1인 1실을 기준으로 고시원 방 개수는 14만 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거주민의 구성은 단순노무직 31.2%, 회사원 29.4%, 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39.4%로 조사되었다. 고시원은 임대차보호기간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대인에 의해서 직접 퇴거를 요청받는 경우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다. 거주비는 17~30만원 수준이었으나 50만원 이상의 고시원도 적지 않으며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시 고시원 거주자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하가 33.3%에 이르고 있어, 고시원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

시설, 쉼터, 고시원 등의 임시적인 ‘생활시설’은 정부가 당장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마련했거나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공간의 문제점은 임시적이기 때문에 주거로 유의미하기 어렵다는 점뿐만 아니라,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요구하는 규범이 강제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쉼터나 생활시설 등은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입소자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따른 나이, 성별, 가족 상황에 기반한 특정한 역할을 요구한다. 쉼터는 청소년, 미혼모, 남성가장 노숙인 등에게 ‘사회적 자활’을 제공함으로써 각자가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규범에 부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집’에 돌아가거나, 새로운 ‘집’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특히 혼외 출산, 성소수자로

서 커밍아웃, 이혼,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가족규범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족(삶의 터전)으로부터 밀려난 이들에게 정책적으로 그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오히려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소수자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된 생활공간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그 공간이 집의 역할을 하고 있고 독립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좀 더 전반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은 전무하거나 대체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 가족상황과 주거권에 대한 경험적 고찰

이번 장은 소수자 각 그룹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각자가 처한 조건과 주거권, 가족상황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청년1인가구, 비혼모,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소수자가 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여타의 세입자들이 경험하는 주거비와 주거환경의 문제 외에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그에 따른 차별로 인해 주거권이 더욱 열악해지기도 한다. 또한 이 보고서를 관통하고 있는 가족상황과도 긴밀하게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인터뷰를 통해서 그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4.1 인터뷰이의 특성

틈새모임에서 보고서작업에 참여한 이들이 나누어 그룹별로 1~2명을 인터뷰하고 녹취한 것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위낙 적은 수를 인터뷰하였고 지역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 내용이 각 소수자 그룹의 경험을 대표한다고 하기 어려우나 부분적으로나마 그 경험을 드러내고 가족상황과 주거권이 다양한 소수자 그룹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내고자 하였다.

	이름	특성	나이	성별	직업	가족상황	현 주거상황
1	가	청년1인 가구	39세	여	박사과정	단독	전세 6,000 (전세자금 대출)
2	나	청년1인 가구	25세	남	계약직	단독	월세 1,000/40 (원룸)
3	다	비혼모	32세	여	개인사업	아들	모자원 거주
4	라	비혼모	30대 초	여	구직 중	아들	월세 2/30 (지인에게 보증금 빌림)

5	마	장애여성	25세	여	독립 준비 중	부모, 언니, 형부, 조카	인터뷰 직후 체험홈 거주
6	바	장애여성	44세	여	시민단체	부모	국민임대아파트
7	사	이주(중국) 한국거주 8년차	50대	여	비정기적 강의	아들, 딸	전세 (전세자금 6,650 대출)
8	아	이주(벨라 루스) 한국거주 11년차	40대	여	주부	남편, 두 자녀	전세 6,500
9	자	레즈비언	34세	여	시민단체	파트너	월세 500/40
10	차	케이	44세	남	주부	파트너	월세 2000/30
11	카	10대 레즈비언	18세	여	활동가	파트너	월세 500/40

이들은 공통적으로 불안정한 주거를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주거지를 마련하기까지 오랜 시간동안 월세 세입자로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반지하, 옥탑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했거나 현재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 계급의 세대적 재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들은 원가족으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장애, 비혼모, 이주 등의 특성으로 오히려 배제와 분리를 경험하였다. 또한 인터뷰이 중 반 정도가 비혼모, 장애인,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시설이나 쉼터, 체험홈 등을 경험하였으나 이 시간이 주거권을 확보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하는 편이었다.

4.2 ‘가족=주거’, 그런데 모두가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한국사회에서 주거는 곧 가족으로 동일시 되어왔다. 경제상황과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핵가족 내부에서도 다양한 분화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주거는 부모와 미혼의 자녀, 혹은 혼인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가족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전제하에서 ‘정상적인 가족’과 다른 형태의 가족, 원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는 지지받기 어렵고 실제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힌다. 또한 ‘함께 살아야 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가족내 갈등과 위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등은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 가족이 집을 구하는 과정

가족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게 되지만 ‘위치’나 ‘조건’의 선택은 가족구성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활동을 하는 이의 동선을 고려하기도 하고, 자녀의 학업을 중심에 놓고 결정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주여성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크지 않더라도 가정생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혼 전에도 직접 이주여성이 계약 안하고 남편 분이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이혼하기 전에도 사실 이주 여성분들은 직접 계약 하지 않고 남편 통해 할 수밖에 없어요. 국적 취득 전에는 아무 권리가 없지요. 아이 여권도 남편이 보증을 해야 지 나 혼자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즉 국적 취득 전에는 내가 엄마가 아니죠. 그냥 허수아미 엄마가 있는 거고 애 어린이 집 보내는 것도 엄마 서류로 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적 취득한 것도 빨리 해야 한다고 서둘렀어요. [사, 이주여성, 50대]

사례 사의 경우에서처럼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의 시기 동안에는 아무런 시민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신분에 대한 남편의 지나친 통제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동네 집 결정은 남편 분이랑 상의해서 하신 거예요?) 친구들 말 들어보면 이사 하는 날 돼서야 통보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실상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맘대로 정해버리는 게 많아요. (중략)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주여성인 부인이랑 상의 안 해요. 그리고 일단 이주여성이 남편이랑 살면서 등본 어떻게 발급받고 주소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채 이혼당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저 아는 친구의 친구 얘기인데 남편하고 계속 살고 있는데 이혼 한 상태였던 거죠. 근대 그걸 모르고 그 친구는 그냥 있었던 거지요. (왜 그런 거죠? 보통 나와 살다가 때어보니 이혼되어 있던 경우는 봤었지만...) 같이 살면서도 이혼 당한 거죠... 남편은 오히려 부인이 기출했다 주장 하지만 기출 한 적 없어요. [사, 이주여성, 50대]

신분의 불안정함은 바로 주거의 불안정함으로 직결된다. 주소지를 기본으로 신분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소지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사례 사의 경우에서처럼 자신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지위’가 신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것이 주거를 비롯한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른채 이혼을 당했을 경우 총체적인 위협이 된다.

이사할 때 나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어떤 집으로 갈지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내 상황을 생각하면 지하철이 가깝다던지 엘리베이터가 있다던지 이런 곳으로 갈텐데 그런 게 아예 없다. 그런게 차별 아닌가요? [마, 장애여성, 25세]

가족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을 때 접근권을 얼마나 고려하게 될까? 이 문제는 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이 가족 내 의사결정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경제적 이유나 다른 상황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곳에 터전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가정은 경제적 단위이기도 하지만 친밀성과 생활을 공유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기여도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 독립은 어떻게 가능한가?

전통적인 가족 규범 속에서 ‘미혼의 딸’이 결혼 이외의 사유로 독립을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건’이었다. 현재도 그런 규범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이나 직장을 이유로 ‘임시적인 독립’을 하는 경우, 기숙사나 고시원, 하숙, 원룸 등 임시적인 거처만을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녀의 입장에서도 결혼이라는 사건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부모와 동거를 같이 하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향이 점점더 강화되고 있으나 그 또한 계급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 여성들이 이게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잖아? 대부분의 부모님은 딸이 나가서 산다고 그럴 때 예를 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 결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다. 결혼이지. 결혼.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나는 상당히 부모들의 반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뭐... 근데!... 어.. 일단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다음에야 결혼할 썸에 빠져 독립을 하겠다. 결혼 없이 독립을 하겠다했을 때는 일종의 결혼에 대한 부모와 이게 뭔가 아주 사이가 나빠져 가지고 확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혼에 대해서 뭔가 입장정리가 서로 좀 있어야 되는 게 있는 거 같아. 결혼에 대해서. (중략) 근데 그래서 나는 일정 정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작업을 했어. 그래서 독립할 시기 즈음에는 ‘재는 안 할 수 있겠구나.’ 일단 결혼은. 이런 거가. 그래서 결혼 자금 얘기가 나온 거야. 사실은. 내가 언제 결혼할지를 모르는 거잖아. 근데 집은 얻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냥 씹씹이 하자 이런 분위기였던 거지. [가, 청년1인가구(여), 39세]

사례 거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결혼자금을 ‘미리’ 받아 독립을 위한 종자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사례 거의 의견처럼 독립하려는 상황에서 특히 부모와 혼인에 대한 입장 정리없이 독립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소위 ‘결혼적령기’까지는 비혼을 결정하거나 커밍아웃하지 않은 성소수자의 경우 끊임없이 결혼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것이 주거할 공간을 마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너무 독립을 하고 싶고 독립을 많이 생각하는데, 집에서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냐고 이야기한다. 저번에 서울에 체험홈 나왔다는 얘기 했을 때도 그럼 같이 들어가서 살자, 고 엄마가 말해서 “아, 독립은 안된다고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알았다. [마, 장애여성, 25세]

사례 마의 경우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가족의 태도를 볼 수 있다. 가족의 거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의견도 반영할 수 없었으나 독립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고, 계속 보호의 대상으로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결정권을 주지 않는 보호는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보호’를 받는 대상은 존중받는 느낌, 가족구성원이라는 느낌을 가지기 어렵다.

처음 독립을 한 건 2006년 8월경이고 신림 9동에 있는 구식 양옥집의 방 한 칸을 월세로 얻어서 살았습니다. 애인 집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구요. 보증금은 애인이 내주고, 제가 월세를 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보증금과 생활비는 애인이, 제가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어요.) 그 집에서 1년 살고, 애인과 함께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빌라의 반지하로 이사를 갔습니다.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5만원이었구요. 낮에도 전구를 켜지 않으면 어두울 정도로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집이었지만 꽤 넓었습니다. 방 두 개, 화장실 하나가 있었구요. 가구와 살림살이는 대부분 애인이 본가의 자기 방에서 쓰던 것들과 애인 어머니가 혼수로 모아놓았던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웃음)이 집에서 살다가 유기견 한 마리를 만나 같이 살게 되었고, 이 개가 외로울까봐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데려온 같은 종(닥스훈트)의 강아지까지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레즈비언, 34세]

사례 자의 경우 현 파트너와의 만남이 독립 하게된 계기가 되었고, 원 가족의 지원 없이 파트너의 지원으로 방을 구한 후 반려 동물과 세 번의 이사 끝에 현재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 동성과의 파트너 관계에서 이렇듯 서로를 지지하

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이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경험은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가부장적 성규범으로 인한 여성과 성소수자의 배제

한국사회에 뿌리깊은 가부장적 성규범은 단일민족국가와 그것을 지탱한다고 여기는 가족제도로 유지되어 왔다.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가부장제가 끝난 것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뿌리깊은 문화는 여전히 곳곳에서 발견된다.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남성가장의 권위를 중심으로 여성의 성역할을 통해 가정을 위해 노동하도록 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함으로써 부계 혈통을 지켜왔던 구조는 여성과 성소수자들이 가족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집을 자신이 포함된 주거공간으로 여기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음... 일단은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 약간 이거는 이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힘든 부분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유독 집안일을 여자로서 꼭 해야 되는 걸 강조하시는 분이셨어. 그러다보니까 계속 부딪히는 게 예를 들면 남동생이나 아버지한테 밥 안차려주는 거. 아무튼 그런 기타 등등 가사일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일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밖에 나와 살면은 그런 거가 좀 자유롭잖아. [가, 청년1인가구 (여), 39세]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가사노동이 어머니, 딸에게만 주어지고 강요될때 그 노동은 가족구성원에게 동일한 의미가 되지 않는다. 특정한 구성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을 때 이 공간의 위계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 노동이 강요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에 거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포항에 가셨다가,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하신거죠.) 아니요, 엄마는 따로 사셔서.(아마 아버지가 같이 계셨으면 더 가기 어려웠을까요?) 아무

래도 언니들이 다들 엄마 근처에 살고있었어요. 형제들 다 잘 사는데 혼자만 이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속상해 하시고. 전화통화할때마다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근데 솔직히 경제적으로 해주는거보다 이해해주고 전화통화해주고 하는 것 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처음에 엄마집에 가실때는 장기적으로 머물 생각이 있었나요?) 모자원 되면 바로 갈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언니들 때문에 오래못있을거라고 예상하고 당장 포항집에서 나와야 하니까. (언니들은 동네 망신이다 라고 하면서 싫어했었나요?) 형부들쪽에 소문이 나면 아무래도, 형부들은 알게 되었어요. 형부들이 다니는 직장이 조금 지위가 있어서 지점장이고 하니까... 처제가 미혼모라고 소문이 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차라리 안보고 사는데 속편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라, 미혼모, 30대초]

사례 라의 경우 애인과의 관계를 반대하자 서울로 이주를 한 이후 애인과 헤어지고 아이를 혼자 기르게 된 미혼모이다. 집을 구할만한 비용이 없어서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잦은 이사를 하다가 시설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머니의 집에서 머무르려고 했다. 하지만 언니와 형부들이 동네 소문이 난다면서 어머니의 집에 머무르는 것을 반대하여 또 다시 원 가족에게 분리되게 되었다.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구성원의 지위에 의해 자신이 차별받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그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미혼모라는 조건은 여전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족사로 인식하며, 가족내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와 관리에 실패했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이다.

(산후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내 돈으로 했지. 근데 시설을 이용해서 하면 비싸지만 수급자는 산후 도우미 쓸 수 있잖아요. 그런걸 이용하면 한마디로 잠잘 곳만 있으면 와줄 곳이 있는데 출산할 때 되면 친정엄마라도 오면 되는데, 보통의 미혼모는 친정집과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친정엄마는 늦게 알았고 혼자 8개월을 끙끙 앓았을거 생각해서... 근데 보통의 가정들은 “니가 그렇게 하고 다닐때부터” 시작해서 괜히 막 있잖아요. 여기서 외면하면 친정에서라도 품어줘야 하는데 그게 속이 상하니까 알고보면 애정인데 속상하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준 상처보다 가족

들까지 몰라주니까 이제는 등부딪힐 때가 없는거야 사람이. 사람들이 등
비밀때가. 그래서 그때부터 오는 우울감을 극복을 못하더라고. 애기 낳고
몸 풀 집도 없는거죠. [다, 비혼모, 32세]

사례 다의 이야기처럼 비혼모는 통상적으로 출산이 있을 때 기대할만한 원가
족으로부터의 지지와 지원을 혼외출산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데, 출산이라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러한 지지와 지원은 더욱
절실해진다. 특히나 예상치 못한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등 부딪힐 곳도 애
기 낳고 몸 풀 집도 없는”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열악한 주거상황은 산전산후
관리를 어렵게 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또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 분노 혹은 고마움의 극단에 있는 가족

원 가족이 장애인, 비혼모, 성소수자 등의 조건을 가진 가족구성원을 분리시
키고 차별할 때 가족은 극단적인 분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혈연은 끊
을 수 없으며, 많은 경우 그러한 분리와 차별도 가족간의 애정으로 읽는 경우
가 많아 차별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고려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거 공간 마련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나이도 어리고 돈도
없어서...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가족들과 사느니 그냥
시설에 들어가서 사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도 한다. 아예 모르는 사람들
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체험홈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는게 낫다고 생
각?) 그렇다. 그 사람들은 가족처럼 이것저것 막 물어보지는 않을테니까.
가족들이랑 살면 사생활 보호가 전혀 안 되는 것 같다.(집과 가족의 관계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집은 지옥 같다.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만큼...
집 밖에 있을 때가 더 행복하다. 가족은 그냥 쉽터? 일하고 잠깐 들려서
쉬는... 집에 있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 안 들어갈 궁리를 한다. [마, 장애
여성, 25세]

사례 마의 경우처럼 원 가족과 아무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쉽터에서
타인과 생활하는게 더 낫다고 여기게 되는데, 특히 청소년이나 장애인처럼 동

등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할 때 프라이버시 보호가 특히 취약해진다. 그러나 주거 공간에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것 또한 인권의 문제이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친정부모랑은 잘 지내요. 우리 아들도 엄청 이뻐하고. 사실 맘은 아프지. 근데 죄책감은 별로 안들어. 내가 크게 호강시킬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까지 시집도 못 갔을 수도 있고 손주는 안겨줬잖아. 어떨 때는 전화하다가 평평 울 때도 있지만 동시에 같이 운적은 없어요. 엄마 주변에 공무원 아가씨가 있는데 결혼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장하다 이려고 (웃음) 얼마나 든든하냐 서울땅에 혼자 있어도 나도 니들때때 살았다 이러면서 원래는 주제가 나였는데 어느새 넘어서 웃다보면 까먹고. [다, 비혼모, 32세]

사례 다의 경우 원가족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적은 사례 중에 하나였다. 서로 간에 부양에 대한 부담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가 열어지면 이러한 돌봄과 지지를 기대하는 것이 더욱 가능해질 것이다.

4.3 '집'의 도움 없이는 집을 구할 수 없다

재개발 논리에 의해 제테크의 수단인 부동산, 그리고 대다수의 세입자들이 겪는 전월세난으로 인해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문자 그대로 '꿈'이 되어가고 있다. 그 꿈을 실현시키는데만 온 부동산 정책을 집중하면서도 투기와 가격상승, 불평등한 분배에 대해서 적절한 정책을 구사하지 못한 정부의 탓이 크다. 제한적으로 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가족'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제한되는 틈새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원 가족에서 배제된 경우나 원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자신의 힘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미션임파서블'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년의 경우 원가족으로부터 혼인이 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지원이 유일하게, 혹은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혼인의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열악한 조건이 된다.

○ 조건부 지원/사적인 지원이 갖는 의미

현재 한국사회의 중산층은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자녀의 결혼비용(대부분 주거마련과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하고, 자녀 또한 그것을 기대한다.

(그럼 노랑진 갈 때 3000만원은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거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셨지. (해주셨다는 건 어떤 거야?) 어.. 우리 엄마가 이제 고시원에 들어갈 때 같이 오셨었거든? 집을 일부만 갖고 수원에서 사니까는 같이 왔는데. 우리 엄마가 고시원을 보고 너무 이렇게 놀라신 거야.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 있지?” 딱 이런 분위기 있잖아.(웃음) 근데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야 얼마나 맘이 아팠겠어. 자기 딸을 이렇게 뭔가 보호되지 않은 공간에서 이렇게 살게 한다는 게. 우리 엄마가 이제 그 다음에는 고시원에서 안사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돈을 주신거지. 3000만

원을. 어. 그냥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신거지... [가, 청년1인가구(여), 39세]

이러한 부모와 자식간의 관습화된 지원은 세대간의 연결을 위한 물리적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간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필수적으로 조율이 동반되어야만 그 물질적인 전승이 가능해지는데 사례 거의 경우 그것이 가능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부모님한테 되게 미안하지만 그때 부모님한테 좀 얹혀살면서 유일하게. 대학 들어가고 나서 유일하게 부모님한테 빌붙었던 적이 그 잠깐 동안 좀 빌붙었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연세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버시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되게 맘이 안 좋았죠. 대부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독립 많이 하려고 하는 게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부모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빨리 짐을 안 지게 해드리려고 빨리 나오는 게 맞는 거 같고. 근데 그게 사실상 나만 생각하면 되게 불이익이잖아요? 집에 있는 게 더 이익이 되는 거니까. [나, 청년1인가구(남), 25세]

사례 나의 경우에는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당연시하기보다 빛지는 것으로 표현한다. 공간적으로 독립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할 것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자녀가 공간적으로 독립한다고 해도, 결혼을 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사례 나의 경우 어머니를 오히려 부양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저야 어머니에게서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지만 애인의 경우에는 결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많은 것들을 사실상 받지 못한 셈이에요. 부모님께서 따로 모아두신 결혼자금과 혼수 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다

니면서 보증금이 계속 오르고, 이사비용도 많이 들면서 사실 애인에게 금전적 부담이 꽤 컸어요. 성산동 집으로 이사할 때부터 애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보증금을 마련해 왔는데 이자 등 부담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꽤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오면서부터는 보증금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내년 5월이면 다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또 고민이네요. 저의 경우에는 처음 독립했던 2006년 이후 월세 부담이 계속 커졌기 때문에 사실 그간 월세로 나간 돈이 피눈물나게 아깝죠.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졌으니 스트레스를 꽤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레즈비언, 34세]

동성애자의 경우 이성애적 결혼제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시 당위적으로 지원하라는 규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것은 동성간 파트너십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이고 이성애중심적 가족제도가 무엇을 재생산하고 세대간에 전승하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 출신 게이들은 서울로 올라가야 좀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나 역시 그런 생각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선 서울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기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싶었다. 대학 졸업 후는 직접 주거 마련이 쉽지 않아 서울에서 살고 있는 누나 집에 머물렀고, 이후 독립하면서 내가 가진 돈이 많지 않아 집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차, 게이, 44세]

사례 차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게이커뮤니티가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곳에 참여함으로써 좀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서울에 살던 누나의 집에서, 게이인권운동을 하면서는 자신이 모은 돈과 집에서 받은 지원금을 합쳐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 지금 까지 살고 있다.

주거를 하는데 돈이 만만치 않은 문제죠, 법도 그렇지만. 저희야 뭐 부모

와 협상이 됐으니깐 이렇게 사는 거지, 보통 사람같으면 500만원에 40만원 못 내잖아요. 그래서 주거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탈가정하고 나서 집을 구하려면 부모에게 기대는 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탈가정해서 일을 해도 시급 4000원인데. 그리고 일을 못 하는 경우도 많고, 자기 명의를 못 쓴다거나 그래서. [카, 10대 레즈비언, 18세]

사례 키는 청소년이 가족의 지원없이 탈가정하여 주거를 마련하는 것의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당연히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동거를 해야 한다고 전제되고 있지만 이미 20세를 전후로 한 보호/비보호의 구분은 의미가 사라진지 오래이다. 청소년의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제한과 경제적 구조, 생산관계 등에 기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권은 사실상 부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원 가족의 지원 외에 다른 방법이 부재

원 가족의 도움없이도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이며 사회보장제도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나라에서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이를 기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그나마 주거복지정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임대주택공급과 전세자금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 생색내기 정도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름에 임대주택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대부분 수급자. 한부모가족이 됐고 우리 안됐어요. 만약에 되면 집 너무 멀리가야 해요. 아니면 가까운 위치는 집이 작아요. [아, 이주여성, 40대]

사례 아의 경우 임대아파트 입주를 원하고 있으나 물량이 충분치 않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살만한 위치나 면적이 아니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지원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나이 제한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면 좋겠다.” [마, 장애여성, 25세]

현재 1인 가구의 경우 만 35세 이상에게만 정부에서 연계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다수 청년층 1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 상승과 그에 따른 열악한 주거 상황을 나몰라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을 얻으려면 나이, 여자 등 제한사항들이 있지만 나이가 많으니까 동사무소에서 대출 신청을 받아주긴 했는데, 천 만원이 넘어가면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은행직원이 처음부터 알려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증을 설 수 있는 사람의 조건도 연봉 1500만원 이상이거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직장만 다니는 사람이면 된다고 했다가. 이 직원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내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대판 싸우고 우리 오빠한테 보증 서달라고 해서 대출했죠. 이사 갈 날이 막 다가오는데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돈이 안 나와서 나중에 준다고 하고 집에 먼저 들어갔죠.” [바, 장애여성, 44세]

제 친구는 이혼해서 혼자 애 키우는데 직장이 있는데 전세금 대출도 안되고 혜택도 못 받고 있어 집구하는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한테 이런 대출 방법도 있다고 해서 대출 받은 친구도 있긴 있는데 동사무소에 신청하려면 보증인이 필요하지만 이주여성이고 국제결혼하고 하면 집 주인이 보증 잘 안 서주려고 해요. 처음에는 보증 해주겠다고 해 놓고 선 나중에는 안 해 주는 경우 많아요. [사, 이주여성, 50대]

사례 바와 사의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인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결국 원가족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했거나 도움받을 가족이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했다.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 가족과 분리된 상황에서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 맞는 보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주여성의 경우 신분을 증명

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조차 남편을 중심으로 한 가족상황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러한 권리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대출제도가 서민을 위한 주요한 주거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거비의 변화는 위의 3번에 서술한대로, 아무래도 제 경우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제게 돈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고, 애인의 경우 부모님과과의 관계가 독립적인 편이라 역시 따로 돈을 지원받지는 않았습시다. 애인 직장에서는 결혼을 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주는데 그것도 받을 수 없고, 전세자금대출도 받을 수 없어서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렵습시다. 그래서 다음 이사 때는 경기도 쪽으로 가야하나 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레즈비언, 34세]

한국사회에서는 공적 보험체계가 너무 허약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원복지가 발달해있다. 따라서 대기업에서 노사간 협상을 통해서 복지의 수준을 정하고 그것이 대부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온 실정이며 점차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양극화되거나 해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 자의 경우 파트너가 혼인한 사람일 경우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으나 동성파트너라는 이유로 그러한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저는 엄마들한테 집이 해결이 되면 정말 얘기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설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그 뒤에는 엄마가 자립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주거만 되면 모든 엄마들이 일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돈을 빌리거나 수급비를 받아도 해결이 안 되요. 월세를 내려면 100만원은 넘어야죠. 지금 엄마들이 쟈 힘든게, 기초수급자는 다른데 지원을 못받는데 얘기 키우려는 건지 살지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를 받아도 돈이 있어야 해요. 관리비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주택에 살면 부담이 덜하죠. [라, 비혼모, 30대초]

비혼모는 입을 모아서 주거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있다고 해도 초기 육아를 혼자서 전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높은 월세임대료와 관리비는 ‘애기 키우지 말라는 건지, 살지 말라는 건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친구분들 중 빚지고 사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정보를 다 모르고, 남편이 직장 없고 하면 조금이라도 대출 가능하면 좋은데 300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못 받고 월세 방에서 어렵게 살 수 밖에 없어요. 남편이 신용불량이라 월세밖에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남편이 신용 불량이었었는데 몰랐어요. 그러니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요. 우리도 대출 받아 전셋집이라도 얻자고 이야기 하니까 그제야 신용불량자 임을 밝히더라고요. 은행거래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결혼 당시 살던 옥탑방 한 달에 35만원이었어요. 할 수없이 옥탑 방에서 3년 살다가 신용불량 해제되고 그 다음에 지하 방 짠 전세로 이사했지요. [사, 이주여성, 50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주도하는 국제결혼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는, 혼인할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이주여성들은 혼인하기 전에 남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오히려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듣고 혼인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야 남편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남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경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많고,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여성들(특히, 이혼한 이주여성들)은,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진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가족상황에 맡겨둔 채 빈곤층에 있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주거 관련한 지원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저희 집에 어떤 탈가정 청소년이 와서 살았던 적이 한 2주 정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일 그랬던 게 만 15세 미만이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아르바이트라도 어렵게 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만 원짜리 한 장 들고 집을 나왔었고 그냥 극심한 폭

력 상태에서 별다른 준비없이 그냥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 데 근데 그 사람은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중략] 청소년 노숙인들이 그렇게 가시화가 잘 안 되는데 예전에 신촌공원에서 탈가정한 10대 레즈비언들이 화장실에서 거기가 노숙 장소였던 그런 역사도 있고.. 진짜 그 때 갈 데가 없어서 몇몇 집 전전할 때, 그 때 그 마음이 진짜 갈 데가 없는 거... 내일 당장 길에서 얼어죽을지도 모르는 거..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거... 그게 되게 불안했었던 거 같아요. [카, 10대 레즈비언, 18세]

청소년의 경우 돈을 마련했다고 해도 집을 계약하는 것이 어려운데, 친권자가 후에라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폭력이나 정체성으로 인해서 탈가정을 한 경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일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능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친구집을 전전하거나 노숙을 하거나 쉼터를 선택하게 된다.

4.4 유일한 주거대책? 미래를 도모하기 어려운 공간

소위 취약계층이나 위기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쉼터, 시설 정책이 있고, 장애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체험홈이나 그룹홈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인터뷰이들은 반 정도가 쉼터, 체험홈, 시설 등을 경험하였는데 공통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곳'이라고 평가하였다. 기존의 집에서 배제되거나 분리되었을 때 긴급하게 갈 수 있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각각의 정책별로 정해놓은 1~3년의 시한을 넘겼을 때 그 다음 대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모으거나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전무하다고 했는데, 따라서 그러한 공간에서 나왔을 때 또다시 열악한 주거 상황에 놓이거나 또다시 원가족의 도움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쉼터에서 생활할 때에는 주거비 나아가 생활비의 보조가 나오지만 그 다음엔 임대주택 등의 다른 주거 정책과 연계고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정책적 한계가 존재하겠지만 특히나 기존 가정의 틀을 벗어난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저하거나, 원래 집에서 나온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무관심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가정 폭력으로 나오면 정말 힘든 게 가정폭력 당하면 쉼터에 있을 수 있는데 어정쩡한 폭력 당하면 걸으로는 멀쩡하니깐 쉼터에 계속 있기 부담스럽죠. 눈에 보이는 상처 말고 정신적 폭력 당한 경우 쉼터 가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집을 감히 못 얻는 거예요. 집 얻으면 남편이 쫓아 올 까봐. 쉼터 계속 있으면 눈치 보이지만 그래도 남편 쫓아올 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눈치 보면서 쉼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룹홈이 있다고 하던데, 쉼터 있던 분들이 나와서 그룹 홈으로 가던가, 쉼터 있다 나오는 분들이 직업 교육 받고 할 수 있는 곳 있다던데) 들어가는 조건이 잘 안 돼요. 어느 지역에 딱 한곳 있다고 들었어요. 그니깐 들어가기 충분치 않아요. [사, 이주여성, 50대]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을 위한 쉼터가 있지만, 증거가 있는 신체적 폭력 피해 여성만 지원이 되고, 언어적, 심리적 폭력 피해 여성은 갈 곳이 없다. 또

자녀를 데리고 나온 경우에는 쉼터로 갈 수가 없다. 쉼터에 입소하게 되더라도 임시적이고, 남편의 방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불안을 느낀다고 한다.

사실 이혼한 경우에는 주거가 가장 중요해요. 살 집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애 데리고 쉼터 가는 것도 쉼터에서 싫어해요. 홀몸으로 오는 건 괜찮지만 애까지 쉼터에서 책임지기 힘이 들지요. 애 데리고 어디 가는 것은 너무 힘이 들어요. 한 2~3 개월 전에 중국에서 온 이주 여성이 남편이 맨 술 마시고 직접적 폭력은 아니지만 자는 애 막 귀엽다고 깨우고... 그렇게 괴롭히니깐 여성이 괴로워서 집 나와서 쉼터에 있는데 어떤 쉼터 인지 언급은 안 할게요. 거기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많아서 이 여자가 일단 나가서 일하면 나가야 되고 아니면 이 쉼터에 있으면서 쉼터의 프로그램 다 받아야 된다. 애는 어린이 집 못 보낸다.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그 쉼터는 애를 어린이 집에도 못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 여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쉼터에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치료 받으며 자립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깐 너무 힘들어서 나가서 집 얻으려고 해도 집 얻을 돈도 없고 집을 진짜 월세라도 얻어도 먹고 살기도 힘들죠. [사, 이주여성, 50대]

쉼터의 프로그램이나 운영방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이 없는 이상 전체 삶의 맥락에서 쉼터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긍정적인 기능만을 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애기를 놓는 거는 시설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출산 비용은 전혀 안 들어요. 거기서 애기 놓고 난 뒤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와서 살 집이 필요하니까. 공과금이나 급여는 조금씩 나와요. 거기서 편한 생활을 하다면 사회에 나가기보다는 거기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엄마들이 좀 많아요. 지역에 조금만 보금자리라도 하나 주면 거기서 애랑 살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자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나라에서는 기초수급을 주고 있지만 엄마들이 직장다니면 바로 끊기죠. 그러니까 수급이 40-50만원 나오는데 애기 분유랑 기저기사면 없어요. 적금을 들 돈도 없죠. 근데 거기서 직장을 다니면 수급권이 끊기는데, 직장다니한다고 바로 월급이 나오는게 아니라 한달이 지나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직장을 포기하고 그냥 40-50만원으로 유지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럼 자립안하게 되잖아요. [라, 비혼모, 30대초]

쉼터와 기초생활수급권 제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수급권 자체가 ‘죽지 않을 만큼’만 나오는데다가 혼자서 육이를 하는 입장에서 주거비를 별도로 마련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마찬가지로이다.

장애인 또한 집이나 시설에서 나오려고 할 때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체험홈에서 지내려고 한다. 체험홈이 요즘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수적으로 부족해서 얼마 되지도 않고, 체험홈 역시 임시 거주 공간일 뿐이다. 보통 길어야 1년 반 정도 살 수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시설로 다시 돌아가거나(가족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니면 다른 체험홈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임시 공간’을 찾아 헤매야 하고 불안정한 삶은 마찬가지이다.

쉼터도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쉼터는 안 가봤는데 그 때 그 우리 집에 15세 미만이었던 분이 왔을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쉼터를 여러 군데, 서울에 있는 건 거의 다 전화해서 알아봤었는데, 일단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폭력상태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집에다 연락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다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친권, 거소지정권의 법에 그렇게 기반을 하고 있거나... 근데 또 쉼터에서 그렇게 연락할 의무는 없다고 연락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빨리빨리 내보내는 게 재정상태에 좋은 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쉼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부모가 그냥 거기서 살라고 포기한 사람들? 그렇게 허락을 한 사람들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탈가정 청소년들은 쉼터에 못 가죠. [카, 10대 레즈비언, 18세]

컴터의 경우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와 극심한 갈등상황에 있는 경우 가능한 선택지에서 제외된다. 학대를 받는 아동의 경우 법에 따라 분리가 보장받지만 청소년의 경우 이도저도 아닌 정책적 상황에 놓여있다.

한편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것, 내가 휴식하고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내 의사대로 구성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집’이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고시원에 생활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왜냐면 그게 ‘집을 나와서 산다.’라는 거가 이런 게 있는 거잖아? 생활을.. 생활에 필요한 어떤 물품들이 갖춰져 있다는 것도 있는 거잖아? 근데 고시원은 정말 모든 것이 최소야. 정말 거기는 자는 것 외에 생활의 공간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중략] 그래서 좀 애매한 것 같아. 집 안이라고 하기도 얘기하기도 그렇고, 집 밖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 왜냐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맞아. 근데 집 같지는 않아. [가, 청년1인가구(여), 39세]

사실상 옷같은 것도 별로 넣어놓기도 힘들고, 수납공간도 되게 적으니까 확실히 뭐 그러니까 욕심을 가져도 자기 삶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도 욕심을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인 거예요. 내가 설마 조그마한 돈이 있더라도 그걸 채워줄 수가 없고, 창문이 없었어요. 그 방에. 창문이 없어서 그런지 먼지가 되게 많이 쌓이더라고요. [중략] 더 큰 건 아니지만 개인 생활이 독립되어 있는 거 같지만 독립된 방이 아니에요. 다 들려요. 옆에서. 친구가 왔으면 친구가 하는 말도 다 들리고, 스피커도 크게 못 켜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행동은 당연히 자유스럽지만 너무 주위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고, 빨래 같은 것도 다 공개가. 고시원은 집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확실히. [중략] 고시원 때는 불면증이 있었어요. 네. 한 거의 뭐 새벽 4시까지 막. 5시까지 잠 못 잘 때도 있었고, 누웠는데도 잠 못 잘 때도 있었고, 되게 또 그런 게 창문이 없으니까 아침인지 낮인지 몰라요. 안에 있으면. [나, 청년1인가구(남), 25세]

사례 가는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집밖에 있다는 느낌을 주는 곳이 고시원이라고 했다. 고시원 총무로 고시원에서 생활했던 사례 나는 다른 사람들도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의 의지대로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공간이다보니 잠자기 위해 몸을 누이는 것이라는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하고 점점 청소나 꾸미기도 포기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불면증, 삭막한 느낌, 황폐한 느낌을 받고 소음이나 빨래로 인해 프라이버시 보장이 안되는 면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좀 더 돈을 모을 때까지 임시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단절과 열악한 환경을 견디도록 하지만 고시원은 최소한의 방음과 통풍, 채광을 비롯하여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당부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휴식이나 재충전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4.5 주거상황을 위협하는 시선

주거할 공간을 마련해나가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소수자 집단이 가진 특성이나 편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임대를 거부하는 직접차별을 겪기도 하고 집주인, 동거인과의 불편한 관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절에서는 직접적인 차별이 아니라하더라도 차별적인 시선과 언행이 주거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자신이 주거하는 공간과 관련된 사람(집주인, 동거인)이나 이웃, 지역사회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신의 주거의 질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가장 이웃으로 삼기 싫은 집단이 미혼모와 동성애자라는 결과가 나온바 있다.

미혼모라고 아는 순간부터.. 처음에 몰랐을 때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알고나서는 모른척하고 애기가 지나가면서 애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줌마 이줌마” 하잖아요. 대답도 안하고 그래요. 저희들이 안쪽집이었거든요. 그 집을 지나가야 하는데 문도 닫아버리고 (어떻게 알게 됐어요?) 집이 다 방음장치가 인중으니까 조금만 저녁에 얘기만 해도, 저도 옆집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다세대 주택인데 밤에 이렇게 있으면 전화 진동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니까. 저도 전화가 오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미혼모 소리가 안나올수가 없으니까 평생 살면서 말을 안할 수 없잖아요. 저희집이 현재는 집에서 끝쪽이예요. 저희집을 들어가려면 집들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시시식거리고 차라리 대놓고 얘기하라고 [라, 미혼모, 30대초]

자신의 가족상황을 알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 되어야 하지만, 주로 알리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이 전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혼한 여성이거나 미혼모의 경우 특별히 그것을 경험한 남성에게 비해서 ‘성적 추문’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이웃으로 사는 것이

아동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롭다고 주장한다. 비혼모가 이웃으로서 어떤 문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단지 비혼모라는 이유로 그러한 차별적 시선이 나 무시를 보내게 만드는 문화가 비혼모들의 주거권을 위협한다.

처음에 한국말 잘 못하고 할 때 집 주인하고 계속 싸웠어요. 옥탑 방 살 때는 집주인이 올라와서 인사하는 순간부터 이제 중국인인 걸아니까 계속 집에서 말소리만 나도 한 사람 이름으로 집 얻어 열 사람 산다느니. 중국 사람이 그렇다 느니... 중국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제대로 대우 받지 못했지요. 말 할 줄 모르니깐 그냥 지나갔지요. 언어를 할 줄 모르니깐 사위만 해도 올라와서 “몇 사람이 사위 하는거냐”, 난리에요. 옥상이니깐 햇빛 나면 이불 널면 도대체 “몇 사람이 사는 거냐”. [사, 이주여성, 50대]

이주여성, 특히 중국인에 대한 편견이 작동하여 ‘속일 것이다’라는 전제로 의심하고 탓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중국인, 세입자, 이혼여성이라는 조건이 겹쳐져 이러한 차별이 좀더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한편 명시적으로는 임대한 주택에 몇 명이 지낼 것인가는 집주인이 간섭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

(집을 구하고 사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어려움은 느끼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여자 둘이 살다보니 처음에는 주위의 시선을 좀 의식하게 되었지만 사실 생각만큼 주변 사람들이 여자 둘이 산다고 바로 커플로 의심할 정도로 상상력이 풍부하지는 않더라고요(웃음) 다만 아직 방 두 개짜리 집을 꼭 구하게 되는 것은 주거 환경에 대한 고려나 갑자기 부모님이 찾아오실 때에 대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집주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결과인 듯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는 살림살이를 각 방에 분산시켜 놓는 것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월세에 살다보니 집주인이 종종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커플 사진이나 다른 소품들에도 꽤 신경이 쓰여요. [자, 레즈비언, 34세]

동성커플의 경우 대부분 집주인이나 가족들의 경우 애인이 아니라 룸메이트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주인이나 가족이 방문하는 것에 대비해 사례자의 경우처럼 각자 방을 사용하는 것처럼 일부러 살림을 분산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이 큰방과 작은방의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서 살림을 분산시키는 경우 효과적으로 전체적인 살림을 배치하기가 어렵고 커플 사진 등을 마음대로 걸 수 없거나 가족으로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받을 등의 성적 친밀성을 가진 두 사람의 공간으로 꾸미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른다.

집이 일층이다 보니까 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창문으로 집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창을 안 닫아놓으면 여자 둘이서 산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은 어떤 남자가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고 보고 이런 적이 있어서 한밤중에 경찰에 신고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경찰이 우리가 청소년인걸 알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워낙 노안이라 그런 문제까진 없었는데 다른 청소년들은 자기 명의로 못하니까 어떤 비청소년에게 기대살거나 아니면 가정집에 사는 경우 뭐 그런 경우인데...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대요. 저기 어떤 청소년이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출청소년이라고.. 가출신고가 돼있으면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잡혀가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카, 10대 레즈비언, 18세]

청소년이 독립해서 사는 것, 어린 여자들끼리 사는 것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은 여러 가지 폭력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시선을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한 위험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맺는 것을 꺼리게 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강요한다고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주거공간을 취득한다고 해도, 그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운 존재의 경우 안전, 안정, 소속감을 가지기 어렵고 그것은 삶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이 주거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4.6 허용된 장소의 열악함과 삶의 제한

앞서서 살펴본 주거의 열악함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평균 1년에 2회씩 이사를 하는 생활을 7,8년간 지속하거나 반지하에서 생활하느라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 또,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일하느라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육이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안정적인 자신의 공간으로 느끼며 생활하지 못하던 시간,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구해진 집으로 인해서 외출을 결정하는게 어려운 장애여성의 경험 등 주거의 열악함은 다양한 삶의 제한을 만들어내고 있다.

○ 집에 갇히기: 사회적 고립

물리적인 계단으로 인해, 생계와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현재까지 자신의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마을’을 떠나야 하는 것 들을 주거상황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계단이 제일 싫다. 계단 내려오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서 결정을 할 수 없다. (집의 구조는?) 마찬가지로. 이불 하나 꺼내더라도 도움을 받아야 하니 불편하다. 집에 들어갈 때는 전화해서 가고 있다고 이야기기를 하고 집에 사람이 없으면 옆 놀이터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오늘 같은 날도 비 오는 날 나가야 하나고 욕먹고 예전에 한 번 설거지 때문에 언니랑 싸운 적이 있다. 설거지를 내가 할 수 있긴 한데 높아서 안 되니까.. 근데 그 날 언니가 아프다고 나보고 설거지 좀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고, 암튼 크게 싸웠다.” [마, 장애여성, 25세]

“어릴 때 살던 집들은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었죠. (그럼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냥 거의 집에만 있었죠. 집에만 있다가 명절에 친척 집에 간다던가 그럴 때만 나오고” [바, 장애여성, 44세]

항상 가족의 상황에 따라 눈치를 보며 외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가족 내부와 사회적 관계 모두에서 자긍심을 갖기 어렵게 한다. 자신이 들어가야 할때 들어갈 수 없는 문, 나와야 할 때를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 집안의 구조가 자신의 높이와 전혀 다를 때 소외되는 과정에서 동등한 가족구성원으로 느끼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10개월 정도? 하면서 좀 나중엔 그게 답답해지더라고요. 아무도 못 만나요. 물론 지금 20대 저 또래들 청년들이 대부분 비슷한 게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건데. 진짜로 사람을 만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그게 좋았던 점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좀 그런 점에서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진짜 되게 답답해지더라고요. 진짜 우울해지기도 하고 진짜 옛날엔 안 그랬는데 혼자서 술 마시는 것도 되게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나중엔 이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주말에 이제 잠깐 집에 내려갈 수 있었는데 그럴 때 그때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때 여자친구 잠깐 만나고 올라오고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런 게 되게 힘들었던 거 같아요. [중략] 사람들도 못 만나고 활동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한 10개월 동안 막 고민해가지고 생각해 놓은 건 되게 많은데. 생각만 많지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뭐 꼭 군대에 있는 것처럼. 군대 있을 때 그렇잖아요. 간혀 있으니까 생각은 되게 많이. ‘나가서 이제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생각은 많이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되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딱 그 느낌이랑 거의 다를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아니다 싫어가지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 청년1 인가구(남), 25세]

군대처럼 갇힌 느낌을 주는 주거공간은 사실상 갇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강제된 주거환경은 인간답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사례 나에서 처럼 고시원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신체적인 건강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건강에도 위협을 가할 가능성 또한 고려 되어야 한다.

“새로 이사 온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 없고 버스만 타고 다녀야 해서 교통의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잘 안 나가게 되어요. 주변에 음식점도 없어요. 주변에 큰 건물들이 생기는데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는 정도예요. 생활환경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요. 달랑 집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이동의 어려움, 주변 환경이 없다는 것. 집에만 있어야 돼요“ [바, 장애여성, 44세]

“지금 사는 집도 곧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던데. 처음에 파주에 갈 거라고 얘기해서 내가 안 된다고 했다. 거기는 지하철도 없고, 그렇게 먼데 어떻게 다니라는건지... 난 아무 생활도 하지 말라는거냐,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 장애여성, 25세]

살만한 주거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주거지역에 기본적인 물, 전기, 교통 서비스가 갖추어져야 한다. 사례 바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한 후 현관까지 진입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지만 교통과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느끼는 고립감이 있다. 사례 마의 경우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주거라는 것이 개별적으로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함으로써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적 차원의 개입과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권리로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래도 성산동으로 이사온 후 마포구에서 ‘민중의 집’이라는 지역운동도 함께하고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도 하면서 지역에 사는 친구, 주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서 좋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동떨어진 학교에서 먼 지역의 임대아파트 단지로 이사온 후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동네’, ‘주민’이라는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었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5월이면 마포구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우리 형편은 크게 변한 게 없어서 경기도 쪽이나 좀 더 외곽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5년간 정들었던 동네 친구들, 동네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 생각만 해도 우울해요. [자, 레즈비언, 34세]

주거는 자신이 계약한 집 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게 된다. 자신이 사는 곳을 더욱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지역을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떠나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역사와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 동네와 마을을 형성하는데 사람의 노력과 네트워크보다 재개발과 집 가격으로만 결정된다면 그 마을을 누가 대의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요원해질 뿐이다.

○ 삶의 터전을 일구기 어려움

세입자들은 보통 2년을 계약하게 되지만 초기 정착비용이 없었던 비혼모의 경우 지인을 통해서 빈집이나 빈방을 찾아 지속적인 이동을 경험하기도 하고, 보다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혹은 불안정한 직장으로 인해 계속 이사를 하게 된다. 지나치게 잦은 이사는 마을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각을 가지기 어렵고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기 어려워서 더욱 자원에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

한곳에 1년 이상 정착한 적이 없었어요. 맨날 돈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깐. 짐이 없거든 그래서 항상. (얘기 낱을때 까지 16번 이사 하셨네요.) [다, 비혼모, 32세]

사례 디는 6, 7년 동안 16번의 이사를 통해서 ‘이사의 달인’이 되었다고 자평했다. 다행히 임신출산전에 모아놓은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있었는데 출산 후후에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기 어려워 잦은 이사를 했고, 출산 후에는 적은 돈으로 좀더 적절한 주거를 찾기 위해 이사를 다니다가 현재는 모자원에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며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출산 전후에 독립해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룸메이트(친구, 친동생들)에 따라 위치와 면적을 조절하면서 계속 주거를 이동하였다.

(혹시 자주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애기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애기가 기관지염이 있어요. 천식까지는 아니지만. 애기가 병을 앓고 있는게 많이 옮겨다니고 추운겨울에 이사다니고. 엄마가 불안하면 애기 심리도 많이 불안해진다고해요. 그래서 아직 많이 아프고 낫지 않는 것 같아요. 병원도 많이 다니지만 집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충분히 애기한테 신경을 쓸 수 있는 여건만 되도 기관지염까지 걸리지 않았을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동네를 옮기면 천식도 한군데서 지속적으로 다녀야 의사가 계속 볼텐데 새로운데 계속 가니까 새롭게 또 시작해야 하니까. 자료를 다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럴때마다 미안하고 애기가 기관지가 안좋으니까 저녁되면 할아버지 소리가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숨넘어갈 듯이 색색하거 토하고 기침때매 잠도 못자고.. [라, 비혼모, 30대 초]

사례 리는 자신의 조건으로 인해 잦은 이사를 다녀야 했던 게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잦은 이사는 혼자서 육아를 담당하는 비혼모가 주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 주거 환경의 열악함

비혼모의 경우에는 육아가 가능한 조건인가가 주거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에 놓일 때 아이의 건강이 나빠지고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더욱 삶의 조건이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혼모가 된 경우가 많고 [중략] 집도 준비도 안되었고 아가씨로 원가족에서 분리가 되잖아. 애기 낳은 것 때문이라도 외면당해서 떨어져 시는데 그럴 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은 고시원 내지는 애기 낳고 나서 썩 데라도 구하려다 보니까 결국 반지하인거야. 그리고 나라에서 매입전세를 해줘도 요즘 워낙에 돈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찾다보면 또 결국 반지하인거야. 곰팡이 생기

고 물새고 그러면 옷 망치고 애기 호흡기 질환오고 병 걸리면 같이 일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주거에서 오는 악순환 때문에 일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집이 안정이 안돼서. [다, 비혼모, 32세]

이 집 보일러가 오래돼서 물을 틀면 찬물이 나와요. 조금만 틀어야 더운 물이 나오고 그래서 옛날 보일러라서 물통이 작대요. 그래서 보일러 고쳐 달라고 해서 사람이 왔는데 고장이 아니고 옛날거라서 통째로 갈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인이 이거 못고친다고 그냥 쓰라고. 애기 겨울에 세수도 해야 하는데 목욕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고 그러니까 그럼 이사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살고있죠. [라, 비혼모, 30대초]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애가 너무 아픈거예요. 도저히 안되서... 고시원에서는 한달 있었어요. (고시원에 살게된 거는 500만원 돌려주고 다시 살게 됐는데, 고시원에서는 애기랑 사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했었어요?) 아니요. 애기는 애기안했어요. 아무래도 고시원이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요즘은 학생도 있고 그냥 회사원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애기가 올 때도 있지만 그나마 좀 조용해서. (옆방사람들과 불화는 없었어요?) 안마주쳤으니까. (그럼 한달만 계셨던 거는 애기가 사는 환경 때문에?) 네 고시원이 책상하나에 침대하나 들어가니까. (화장실은 따로 있었어요?) 네 밖에. (공동화장실에서 애기 씻기고 할 때도 힘들었겠네요) 거기서 안 씻기고 샤워장 갔어요. 목욕탕에. 아무래도 춥고 하니까. 목욕탕에 회원권 끊어서 정말 자주 갔어요. (밥도 공동 주방이죠? 애기 밥은) 이유식 때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종근당에서 나온 이유식이 있었어요. 그걸로 타서 먹이고. 분유를 좀 많이 먹었어요. [라, 비혼모, 30대초]

사례 다, 라의 경우 비혼모로 육아를 하는데 있어서 주거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한다. 적절한 채광, 난방, 통풍, 온수가 제공되지 않아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유아가 건강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상황에 더불어 잦은 이사과 낮은 경제적 수준으로 인해 의료접근성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관에서 1년 지냈어요. 엄청 불편해요. 애기들 있었어요. 옥상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두 번째 집은 반지하였어요. 반지하 월세 15만원 23개월 살았어요. 돈 아까워서 1층 전세 들어가서 8년 있었어요. 그때 몰랐어요. 한국에는 보일러가 있어요. 창문 열었어요. (옆집) 보일러 바로 우리 창문으로 들어와요. 세 번째 집 2주전에 얻었어요. 전세보증금이 6500만원. 예전 집 (명함만큼) 조그만데 지금은 두 배. 엄청 넓어요. 기분 좋아요. 집 들어갈 때 왜 이렇게 싸지 이상했지만 집주인 얼굴 보면 너무 착했어요. 들어가는 날 비 많이 왔는데 집 전체에 비가와요. 비가 새요. 지금 집 화장실 우산쓰고 이렇게 있어요. 집주인한테 “저 어떻게 해요?” 얘기했는데 집주인이 “입 다물어. 내가 다 고칠 거야”라고 했어요. [아, 이주여성, 40대]

아의 사례는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부동산과 집주인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집을 중개, 임대하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비상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무래도 반지하에 계속 살다보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었습니다. 면역력도 약해지고, 두통도 잦았구요. 그래도 사람들은 나은 편인데 개들은 민감하게 영향을 받더라구요. 반지하에 살 때는 몰랐는데 현재의 합정동 집으로 이사를 오고 나니 개들의 잔병치레가 딱 끊겼어요. 성산동 집은 집문 앞에 작은 복도가 있고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길인데다가 복도 쪽 밖에 주차장이었는데 외부 벽에 창문이 있어서 거기서 들어오는 먼지와 바람 등을 잘 차단해 주었습니다. 별도의 복도와 출입문이 있어서 그 점은 좋았어요. 하지만 망원동 집은 먼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레즈비언, 34세]

공통적으로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습기와 곰팡이, 프라이버시 침해, 먼지 유입, 채광의 안좋음 등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는 없다는 반지하를 한국 사회에서 당장 없앨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설비보완이라도 하도록 집주인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립하고 살았던 두 번째 집은 환경적으로 되게 안 좋아요. 습하고, 킁킁하고 그래서 비어 있는지 오래 되었는데 안 나갔어. 내가 집을 구한다고 하니 00언니가 그 집이 비었다고 해서. (접근이 그래도 가능하니까) 휠체어 타고 접근이 가능하니 가서 보라고 사실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유 하나로 그 집을 얻었죠. 다른 건 볼 거 하나도 없었는데.” [바, 장애여성, 44세]

사례 바의 경우 국민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 전에 살았던 집이 반지하와 비슷한 환경이었는데 단지 휠체어를 현관까지 접근하는게 가능한 집이라는 이유로 선택하였다고 했다. 그 이후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적은 평수이다보니 휠체어를 타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싱크대, 창문, 방문 손잡이, 화장실 등 전반적인 시설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 장애인 주거정책이 단지 임대아파트 우선순위를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등으로 노인 등 다양한 신체적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가능한 설계도 도입되어야 한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이 보고서는 소수자에 대한 주거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에 주거정책이 가지고 있던 정상가족중심성에 대해 문제화해보려는 시도로 작성되었다. 소수자의 경험은 소위 특수한 사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인 주거권을 성취하는데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어떤 차별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정상가족중심성에 따른 가족상황차별이 주거권을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차별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한국사회의 주거정책은 부동산정책과 소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양극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보장해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이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이동,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라 ‘집’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달라져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의 주거형태의 특징은 계급적 양극화, 1인 가구의 증가, 가구형태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1인 가구와 다양한 형태의 가구형태 뿐만 아니라 계급적 양극화조차 가족 문제와 관련된다. 많은 이들이 이미 지적하듯이 계급의 세대적 유지와 재생산은 주로 부동산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는 정책이 대응하기 전부터,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형태로 그러한 현상을 반영해왔다. 최근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시된 정책은 1인 가구가 처해진 경제적 조건을 무시한 잘못된 정책일 뿐이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1인 가구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개선하고 공공주택 정책에 1인 가구를 반영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주거형태의 다양화는 필수적으로 가족과 친밀성에 대한 다른 기대와 욕망을 수반하고 서로의 변화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공간의 배치, 면적, 위치, 의미에 대한 기준과 생각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인가구와 다양한 형태의 삶을 반영할 수 있는 주거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주거권의 틈새를 메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거정책을 비롯한 복지정책, 사회정책의 정상가족중심성이라는 ‘전제’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4인가족에서 1인가족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정책의 관습과 규범

을 질문함으로써 차별을 제거해나가는 것이다. 다른 삶의 형태를 정책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특정한 형태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주거정책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기존의 정책적 전제가 어떠한 차별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를 환기하는데 보다 주된 목표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소수자의 경험을 담아내고자 하였으나, 다양한 경험을 담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범주와 경험이라는 것은 이 보고서에서 대표하거나 전형화 할 수 없다. 그나마 분절적으로 논의되었던 차별들이 독자적인 이해관계에 놓여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담지하지 못해온 주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중요한 근거로 이해되었으면 한다.

마무리하면서 인터뷰이들이 전해준 주거를 둘러싼 기대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 관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그것은 기존의 가족개념과 일치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애적인 동거관계도 아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형태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가족상황으로 인해, 혹은 자신이 가진 조건으로 인해 원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차별로 인해서 자신이 충분히 주인이라고 여길 수 있는 공간의 절실함을 강조한다. 집에서 느끼고 하는 안전감, 안정감, 소속감은 당연히 커뮤니티와 지역사회로 확장된다. 이는 불안정한 집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기만의 방’에 대한 기대와 힘

고시원 살면서 또 느꼈던 게 한편으로 좋았던 게 저만의 시간을 가졌던 게 좋았다고 했었는데. 제 성격이 좀 그런 거 같아요. 독립된 공간이 무조건 필요한 거 같아요. 저는. 생각할 여유가 필요해요. 그게 뭐 꼭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좀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지 일 하는데 있어서의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서 공간이 없으면 힘들 거 같아요. [나, 청년1인가구(남), 25세]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공간에 대한 권리와 자신의 경제적 권리가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진 않더라도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모와 같이 살아도 그건 부모집이지 내 집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용돈을 받아도 그건 자기 돈이 아닌 거고, 자기가 식사를 해도 그게 자기 음식이 아닌 건데. 그런 상황에서 탈가정을 함으로써 그 때야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탈가정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자립할 수 있는 대안들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 가족 체제에서 청소년이 자기 삶을 선택하려면 탈가정을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카, 10대 레즈비언, 18세]

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방에서 살다보니 나도 그렇고, 부모님 사생활에도 안 좋은 것 같다. 내년에는 언니가 이사하니 내 방이 생긴다고 하지만. [마, 장애여성, 25세]

○ 삶의 공간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대

음... 핸드폰에 이 친구를 가족의 폴더 안에 넣어놨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강의를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죽거나 해서 이 세상에 없으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았어. 그거는 우리 부모... 잘 모르겠는데 난 주위 누군가가 죽지 않아서 아직 그게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머릿속으로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랑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감정일 거 같은 거지. 이 친구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내가 오면서 이 친구는 나한테 가족이구나. [중략] 나는 예를 들면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더라도 같은 집에서는 못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집에서 되게 편하게 쉬고 싶고 막 이런데 그 역할에 충실해서 뭔가 내가 스스로 부담을 느껴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은 집에선 안 하고 싶어. 같은 동네에서 살면 좋겠다. 같은 집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 [가, 청년1인가구(여), 39세]

근데 어느순간 얘기 아빠를 씹고 있는 내가 한심하고 왜 내가 그 사람을 욕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지하는 생각이 든거야. 그러면서 딱 없어졌다

니까. 그때 거울을 봤더니 살도 찌고 어깨도 뭉치고 잠도 못자고 [애 아빠 집에서] 애기 데리고 나와 살다가 1년 지난 그 시점에 생각해보니까 돈이 좀 불편한 거 말고는 별거 없고 애 아빠 집에서 투명인간으로 사는 것 보다 남는 것도 있고 사람도 만나고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살도 빼고 하나하나 한 거예요. 세상밖에 나올 준비를 한거지. [다, 비혼모, 32세]

일단 서로의 생활패턴이 잘 안 맞는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고, 조금 더 나의 공간을 갖고 싶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 집이 그 사람 엄마 집이니까 내 집이 아니고.. 딴 데 구해도 사실 내 엄마 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싸우면 또 다시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구나, 길에서 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 것이 없다는 게,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불안정하다는 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따로 살려고요. [카, 10대 레즈비언, 18세]

○ 다양한 가족상황을 위한 주거형태

근데 집을 알아볼 때 어려웠던 게 뭐냐면 둘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방이 두 개인 집은 방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거야. 근데 똑같이 큰 집을 얻으려면 돈이 너무 비싸고. 그렇지 않은 집은 다 이모양인거지. 누구 한 사람은 작은 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되게 미안한데 그 친구가 이제 작은 방을 쓰게 된 거지. 되게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가. [가, 청년1인가구(여), 39세]

그리고 또 좀 다양한 방식의 주거 형태?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는 주거 형태라고 한다면. 일률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일률적으로 다. 집 가보면 안방이 여기 있고 작은 방이 여기 있고 위치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예 그런 게 바뀌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주거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친구들이 같이 사는 사람들은 방이 똑같아야 되고, 크기가. 그리고 거실은 적어도 화장실이 두 개 있어야 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나, 청년1인가구(남), 25세]

○ 자신이 충분히 소속되는 ‘안전한’ 집과 커뮤니티

하지만 현재의 나에게 집은 가장 위로가 되고 안정을 주는 공간이에요. 나의 삶을 내 스스로 구성할 수 있게 된 후로, 집은 내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맘껏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죠. [중략] 그래서 ‘집’은 나에게 안락과 휴식을 주는 공간이자 우리 공동체를 유지해주는 공간으로서 매우 소중합니다. 나중이라도 꼭 조그만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어요. 크거나 비싼 집이 아니어도 꼭 마당이 있으면 좋겠어요. 동물들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햇볕과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집에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이가 들면 도시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건, 동네 커뮤니티에 관한 것이에요. 마포구에 살면서 동네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하고 즐거운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런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싶은데 이성에 가족 중심의 주민들과는 사실상 편히 관계 맺고 교류를 나누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LGBT 커뮤니티와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를 꼭 만들고 싶어요. [자, 레즈비언, 34세]

주로 같이 활동하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주거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이 혈연가족보다 ‘식구’ 같은 느낌이 더 든다, 언제든 누군가 힘들다면 들어오고, 그러다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나가는. 내 집 말고도 다른 친구 집에도 그러한 친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략] 그나마 이런 상황들이 우리 선 안에서 해결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사는 더 넓은 주거 공간을 꿈꾸게 되더라. 이 점에 대해 고민하는 같은 단체 회원들이 있는데 물론 이를 위해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들은 단체 안에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전망이 어렵게 보이지는 않더라. [차, 게이, 44세]

사실 이혼한 경우에는 주거가 가장 중요해요. 살 집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중략] 물론 저도 한국에 와서 족보 찾는데 가서 큰

아버지 찾았어요. 그런 건 좋긴 하지만 부부는 갈라지면 남남인데 다 찾을 수 있는 게 진짜 문제예요. 너무 끔찍해요. (안전한 집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편안해야 되는데 이혼하고 편안하게 못 사는 게 문제죠. 제가 이사한 집 앞에서 애 아빠가 애 데리고 나오라고 해서 어떻게 내 주소 알았냐고 동사무소 에다가 항의했죠. 동사무소에서는 안 알려줬다고 하지만 그러면 알 때가 없는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 이주여성, 50대]

<참고문헌>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가족구성권연구모임 5주년 활동자료집] 2011. 9.
- 강미선·장미현 “가족개념의 대안에 기반한 주거정책의 거시적 방향 제안 - ‘돌봄 공유’의 물리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건축] 제25권 제8호 국가인권위원회, [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9.
- 국토해양부,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2010. 3.
- 국토해양부, [임대주택업무편람 매뉴얼], 2008.
- 국회입법조사처, [양육 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2010. 7. 29.
- 김두나, [기혼여성의 홈리스(Homeless)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7. (미간행)
- 김소임, “인정 패러다임에 비추어 본 가족상황차별 담론 분석 : 가족 관련 법 및 신문 기사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7.
- 김영태, “프랑스의 주거복지정책”, [복지동향] 통권 제97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6.
- 김옥연·문영기, “1인가구 주거실태 분석 -서울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12호, 2009.
- 김중희·김영찬, “1960~1970년대 여성지에 나타난 근대적 주거공간 및 주거문화 담론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10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 민주노동당,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 담론·제도·사례연구], 2008.
- 박선영, 윤덕경, 박복순, 김혜경,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박철수, “1930년대 여성잡지의 ‘가정탐방기’에 나타난 이상적 주거공간 연구”, [건축], 제22권 제7호
- 변미리·신상영·조관중,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 신성해, “프랑스의 주거계층분화와 공공정책에 관한 고찰 :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국토], 2006.

신은기·김광현, “가정생활의 관점에서 본 근대 주거공간의 특징에 관한 연구 : 로버트 커의 저술에 나타난 19세기 영국 중산계층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건축], 제26권 제8호.

양세화·은난순·류현주, “일제강점기 가정박람회를 통해 본 근대 가족의 이상 주거”, 2006년 춘계학술대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이태진 외,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주거급여 시행 10년], 보건사회연구원, 2010.

이태진·현시용·김선미·우선화·김정은,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주거급여 시행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숲,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자료집], 2009, 11, 27.

장영희,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 연계체계 구축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전남일, 양세화, 홍형욱 저, [한국 주거의 미시사], 돌베개, 2009.

정민우·이나영,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성별화된 독립과 규범적 시공간성”, 경제와사회 2011년 봄.

타리, "성소수자와 주거: 인정과 공공성의 이중 목표를 향해", [LGBT인권포럼 자료집], 2010.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의 가족 구성권 토론회] 2006. 9. 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김금래 주최, 52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 200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국회의원 최규성 ; 국회의원 신영수 공동주최,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본 장애인 주거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2010. 9. 27.

현대경제연구원, “국내 1인 가구의 7대 구조적 특징 -1인 가구의 저소득 고령화 심화”, [경제주평] 394호, 2010. 4. 9.

홍형욱, “근대 이후 한국주거의 미시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5호.

<참고자료>

소수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워크숍

- 가족상황차별 함께 고민하며 주거권의 새로운 의제 찾기

일시: 2011년 11월 24일 오후 2~5시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

주최: 소수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틈새모임

[워크숍 프로그램]

사회: 미류

1. 틈새모임의 보고서 초안 발제와 토론(발제: 타리)

“주거권과 가족상황차별 - 소수자 주거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2. 휴식

3. 소수자 주거권 확보와 주거권 새로운 의제 찾기를 위한 토론

(토론: 언니네트워크/가족구성권연구모임, 동성애자인권연대, 마포 민중의집,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지하사는여성들의 모임 ‘반만올라가면 일층’, 신촌민회, 장애여성공감, 청년유니온,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소수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워크숍 토론문

[공통질문]

- 1) 그동안 주거권 관련 활동을 했던 것 혹은 고민이나 구상을 소개해주세요. (목표와 목적, 내용 등)
- 2) 왜 주거권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는지, 기존의 활동과 주거권 관련 활동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기존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혹은 주거권 운동에 어떤 점을 기여하였는지 소개해주세요.
(앞으로 하고 싶은 단체는 주거권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나 향후 해보고 싶은 부분, 기대하는 부분을 적어주셔도 좋아요)
- 3) 주거권 활동에서 어려운 점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나누어주세요.

[토론자]

언니네트워크/가족구성권연구모임
동성애자인권연대
마포 민중의집 독립생활자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지하사는여성들의 모임 '반만올라가면 일층'
신촌민회
장애여성공감
청년유니온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이상 가나다순)

언니네트워크/가족구성권연구모임

□ 언니네트워크 비혼 운동 : 다양한 여성들이 이성애적 결혼 제도 밖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지지하면서 뒤따르는 사회적 비난과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혼 여성들이 현재의 가족제도 밖에서 생애 전망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대안적인 가족담론과 복지를 고민하며 가족구성권연구모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 혼인-혈연가족 중심의 가족 정책을 넘어 다양한 파트너십과 공동체적 관계를 지지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가족담론과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가족중심의 주거 제도를 비판하면서, 주거 권리에서 배제되는 그룹(성소수자, 비혼, 장애인, 1인 가구)들이 겪는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2008년 발간한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에서는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임대주택정책, 고용관련법·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2010.3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에서는 『부동산 계급 사회』의 저자 손낙구,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주거권운동을 하는 호연님을 초청하여 주거 문제의 구조적 측면과 소수자들의 열악한 주거 상황이 어떤 물리적, 관계적인 효과와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틈새모임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35세미만 전세자금대출 문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적극적인 대응 정국을 계기로 ‘가족상황차별’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거제도 및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0.9 5차 가족정책포럼 <주거제도와 가족상황차별>에서는 전세자금대출 문제와 함께 청년 빈곤, 비혼, 성소수자 그룹의 구체적인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2)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의 활동을 ‘주거권 활동’이라 명명할 수 있을지는 잘 모

르겠습니다. 다만, 가족구성권연구모임에 속한 활동가 및 단체들의 많은 수가 틈새모임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주거권 운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종 틈새모임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전반적인 복지 제도와 소수자 차별의 맥락, 대안적 가족제도의 틀에서 주거권과 연관된 담론적 자원을 생산해왔으며, 이 자리에서 그 성과와 고민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가족 복지, 사회보장제도의 상호관련성 : 주거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규정과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부양-피부양 자격은 ‘동거’, ‘동일세대원’을 조건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혼인-혈연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세대원들이 실질적인 부양과 돌봄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연구모임은 ‘동거’를 기준으로 보다 탄력적인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누구나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한다는 헌법적 맥락에서의 주거권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주거권운동네트워크가 <임대아파트나 비닐하우스촌, 쪽방 등에 산다는 이유로, 혹은 집이 없어 거리에서 잔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 된다. 또한 국적, 인종, 성별, 장애, 나이,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집을 구하거나 집에서 살아가는 데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거권리를 확장하고 있는 것을 참조로, ‘함께 산다’는 것에 관한 제도적 의미 규정에 있어 혼인-혈연가족과 그 외의 가족들 간의 차별을 두지 않는 것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임차보호법에서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근거지가 변경되거나 사망했을 때에 혼인-혈연가족이 주택에 대해 임차, 양도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지만 비혈연공동체의 경우 그러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보호’하려는 대상을 선별할 때에 ‘세대’, ‘동거’, ‘공동생활’이라는 실질적인 생활모습을 추적하는 것 같지만, 좁은 의미의 가족에 한정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족양극화 : 이는 높은 주거 비용의 충격이 어떤 계층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경제파탄과 복지공백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가시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가족’은 한 세대의 자원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지속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배구조가 매우 취약한 한국의 상황과 청년 실업으로 인해 빈곤층 가족은 함께 사는 방식보다 각각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비용보다 소득의 상당부분에 달하는 월세를 내는 것이 단기적으로 생활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유시주택’으로 분류되는 임시적인 거처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집니다. 저출산, 고령화, 미혼율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사회적 담론과 정책이 가족의 복원과 행위자들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가족’이 해왔던 완충작용들을 사회적 영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 양극화’라는 개념이 이러한 상황을 펼쳐보일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인센티브 제도로서 주택 정책 : 빈곤층을 위한 쾌적한 주택이 제공되지 않으며,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는 대응책으로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특정한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거나,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MB 정권 아래 강화되고 있다. 이는 가족을 구성할 의사가 있는 이들의 주거권이 우선한다는 것인데, 결혼제도 밖의 사람들을 ‘가족을 구성할 의사가 없는 이들’로 규정하고 (국가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가족에게 ‘주택’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다.

○ 관계적 폭력성과 주거 : 제도적 소외나 경제악화 등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주거권이 보장될 수 없기도 하지만, 주거는 함께 공동생활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의 폭력성에 의해서도 위협을 받습니다. 자녀의 성정체성을 용납할 수 없어 가해지는 직간접적인 폭력, 아내, 아동 폭력, 성폭력 등과 함께, 특히 연소자의 경우 주거와 공동생활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기반에 대한 불안 속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백배용기를 내어)불편한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집에서 쫓겨날 가능성을 무릅쓰는 일이 됩니다. 나이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

한 관계적 폭력에 의해 분거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소수자들을 위한 임시보호소, 시설 이외의 주거 권리를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고민이 됩니다.

3)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2012년 큰 틀에서의 대안담론을 바탕으로 복지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활동과 함께 ‘공동생활’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파트너십제도의 현실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개선안을 사회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설계하기 위해 연구모임 역시 구성원의 외연을 확장하고 다른 모임과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1)

동인련이 그동안 주거권 관련 활동을 했던 것은 없어요. 성소수자 운동진영이 차별에 저항하며 평등을 말해온 조건에서 다른 권리들을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동인련은 청소년, HIV/AIDS를 주된 활동을 삼고 당사자 혹은 관심 있는 사람들과 활동을 만들어 왔고 3년 전부터 성소수자 노동권을 고민하면서 여러 조사나 발표를 가져왔어요.

2011년 초 무지개행동에서 LGBT인권포럼을 하면서 사회권적인 측면에서 주거, 노동, 가족구성권을 들었어요. 이때 성소수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틈새모임에 함께하기로 제안도 받았지만 담당할 수 있는 활동가가 없고 전임 활동가가 생긴지 2달 남짓이어서 회의에 참가하지도 못했네요. 하지만, 누구나 특히 성소수자 살아가는데 있어서 주거라는, 집이라는 것이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실천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더구나 제도적으로 차별임에도 혼자 살거나 2인 이상이 살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무엇을 바꿔야하는지 잘 모르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집을 얻거나 누구와 살거나하는 것에 제약이 있거나 평등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면 이런 것에 대응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2)

사람이 사는 집에 대한 어려움은 그저 집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을 구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일하는 조건, 혼자 혹은 누구와 사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그러한 부분을 찾고 그 안에서 어려움을 듣는다면 좀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노동, 복지, 의료, 문화 등과 연결된 것들도 있을테구요. 그런 걸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3)

흔히 주거권이 말해온 것이 철거, 재개발에 국한되었기에 누구나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로 자리잡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잘 이야기할 수 있게 찾아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포 민중의집

독립생활자 지역 커뮤니티 사업의 배경과 진행

지역에 기초한 “생활 속의 협동” 커뮤니티의 새로운 형태를 고민하면서 그동안 성미산 마을 공동체와 같은 아이를 둔 가족단위의 활동에서 소외되었던 독립생활자들을 새롭게 주목. 먼저 독립생활자들의 삶과 현재에 대해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료조사와 심층인터뷰,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취지에 공감하는 민중의 집 회원과 지역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독립생활자 커뮤니티 기획단’ 모임을 시작. 사업의 주된 대상은 마포구 성산동, 망원동, 서교동, 연남동, 합정동 일대에 살고 있는 20~30대 독립생활자로 정했고, 이들을 만나고 지역에 독립생활에 대한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 ‘독립생활자 일촌맺기 프로젝트’라는 기획사업을 진행.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독립생활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참 삶 참 경제 특강’을 시작으로 ‘독립생활자를 위한 천원 재무상담소’, ‘독립생활자들의 소모임 만들기’, ‘친구하는 영화관’,

다정한 텃밭 만들기, '다정한 김장'이 있었음.

앞으로의 계획

2012년에는 독립생활자들을 위한 강좌, 상담, 공동작업, 생활협동, 나눔,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자 함.

추진목표	사업	세부 내용	
독립생활자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독립생활클럽'	홀로서기 강좌	설명	· 진정한 '독립'을 위해 필요한 인문/사회 교양을 쌓는 강좌
		일정	· 2~3월, 5~6월, 9~10월
		추진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돈벌이 노동으로서가 아닌 생산 그 자체로서의 일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외된 노동의 체계에 갇힌 삶을 스스로 점검하고 바라보기 ② 인생 전체의 라이프사이클을 보고 자신의 쓸모에 대해 이해하고, 진정한 쓸모를 위한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의 의미를 이해하기 ③ 돈을 이해하고 내 자신에게 맞는 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④ 인간됨을 잃지 않고 살기, 최소한의 연대로 더불어 살기,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스스로 경제적 자립하기 등을 고민해보기
	천원 재무상담소	설명	· 독립생활자들의 재무상태를 진단하고 상담해주는 상담소
		일정	· 상시 운영
		추진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취약계층 재무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리얼와이즈 컨설팅'과 함께 재무상담소 상시 운영 ② 적게 버는 독립생활자들을 위해 상담비는 천원으로 책정
	짜투리 공방	설명	· 물건의 리사이클링을 위한 기술을 배우고 작업을 하는 공간
		일정	· 상시 운영
		추진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물건 리사이클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목공, 재봉, 생활공예 등)을 배우는 워크숍 진행 ② 리사이클링에 필요한 간단한 공구와 재료를 구비하고, 민중의 집에 작업공간을 마련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③ 그밖에 동네에 이용 가능한 공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 공유

자취자들의 저녁식사	설명	· 혼자 밥을 해먹는 자취자들의 밥상모임	
	일정	· 월 1회	
	추진 내용	① 한 달에 한 번 민중의 집 주방공간을 활용해 자취자들이 함께 요리해서 나누어 먹는 밥상모임을 진행 ② 요리법과 자취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가능	
다정한 시장	설명	· 물건과 재능을 나누어 생활을 필요의 채우는 베품시장	
	일정	·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진 내용	① 독립생활자들이 안 쓰는 물건들을 교환하고 사고팔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남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놀이들을 나누는 베품시장을 계절마다 한 번씩 개최 ② 시장이 열릴 실내장소는 민중의 집, 야외장소는 동네에서 알맞은 장소를 물색	
지역사회 돌봄활동 '혼자가 아니야'	설명	· 최소한의 연대, 더불어 삶을 실천하기 위한 지역사회 돌봄정보 공유	
	일정	· 수시	
	추진 내용	① 지역사회 내에 돌봄이 필요한 곳, 사람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일링을 통해 독립생활자들에게 전달, 돌봄관계를 매개 ② 독립생활자들의 돌봄활동 후기와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돌봄이 주는 개인의 성장과 고립감 치유의 경험을 공유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1)

이룸에서는 2006년부터 청량리성매매집결지에서 여성들과 만나면서 일하는 공간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주거권을 살짝 고민만 했지요.

성매매여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막달레나의 집과 이런 고민을 나누는 주거권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고, 집결지내 쪽방구역 여성과 인터뷰를 진행

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주거불안을 듣기도 했어요. 재개발 소문만 무성했던 곳이 2010년 일부 지역이 철거되면서 대책 없이 밀려나면서도 여성이나 이룸이나 별수 없다는 무력감만 생기기도 했지요.

하지만, 일할 곳을 찾아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구하는 이동의 간격이 짧은 노동이다 보니 주거문제는 여성들에게 노동하는 것과 가장 가까이 붙어있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일부 업종에서는 집 보증금을 선불금으로 제공 받거나 부동산업자가 사채업자를 소개하여 방일수를 찍게 하죠. 성매매에서는 일하는 것이 정주를 막는 요소이기도 하고, 자유롭게 이주를 원할 때는 빚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많아 '안정적인 주거'의 의미에 대해서 기존의 주거권이 가진 고민과 결을 달리 할 것도 같아요.

사실 그냥 내부적인 고민만 조금 있을 뿐이지요 ㅎ

2)

이름에서는 탈업하여 주거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쉼터입소를 연계하기도 하는데, 규율적인 단체생활, 주거제공 보다 자활과 가시적 성과중심적인 프로그램, 단기 임시주거는 거부하는 쉼터 운영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위에 적었는데 이동이 잦은 특성상 늘 불안정주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쉼터의 기능도 미비하고 다른 지원도 없죠.

그런데 여성들이 전체적인 삶의 계획안에서 주거를 계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권리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어려워요.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역시 어렵네요. 같이 얘기해 봐요.

반지하사는여성들의 모임 '반만올라가면 일층'

<http://cafe.daum.net/weliveinB>

1)

① 배경: 2010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목할 만한 현

상에 관심을 가진.

: 201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 거주 1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6.3%에서 지난해 24.4%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소위 부모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정상가족)의 비중은 32.1%에서 23.1%로 줄었다.

: 2005년 국토해양부 연구보고서 '지하주거공간의 주거환경과 거주민실태에 관한 연구'(하성규 외)에 의하면 통계청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도시인구의 1인 가구 다수설을 강화한다. 서울 14개 구와 수도권외의 수원, 성남, 안양, 부천, 하남, 구리 등에서 표본 추출한 462개 가구는 오늘날 도시반지하생활자의 현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지하주거세대대의 거주인원은 평균 2.32인이었으며, 특히 1인 가구가 전체의 50%로 가장 많았다.

: 그토록 많은 반지하집들, 반지하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아무도 그들의 존재를 모를까?

② 목적 1: 반지하사는여성들의 모임을 통해 1인 가구 문제를 가시화하고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담론, 복지정책에 균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키로 함.

③ 목적2: '반지하 공간'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을 기획함.

- '여성'들로 한정된 것은 빈곤문제나 주거권 문제에서 젠더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확인코자 했음.

: 전국의 1인 가구 비율은 23.9%(4,142천 가구)로 2005년에 비해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전남이 28.9%로 가장 많다. 53.5%가 여자이고, 남자는 30대, 여자는 70세 이상에서 비율이 높다. 결론은 고령화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 여성이 독거인구의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 빈곤층의 외연은 확장되고 있다. 동시에 빈곤의 주체는 빈민 뿐 아니라 '실업자', '여성', 비정규직, 비이성애자, '청년'으로 변화했고 이들은 서로 중첩되어 있다. 고립된 비가시화된 인구로서의 반지하거주자는 이러한 신빈곤의 주체와 어우러져 '나이든 할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여성이 최고로 높은 임금을 받는 30대 초중반으로 양질의 노동시장에서는 퇴출을 당하고 이 시기는 이성에 결혼에 대한 강한 압박에 시달리는 시기이다. 40대 후반의 남성 가부장이 없는 여성, 이 존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은 일해도 가난한 저임금층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④ 목적3: ‘반지하 공간’을 통한 주거운동, 빈곤운동의 다각화하고자 함.

: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보증부 월세와 전세로 각각 44.9%, 42.8%가 살고 있었다. 87.7%가 4-5000정도의 가격의 집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었다. 보고서 상의 월 평균 임대료는 22만원이었다. 그러나 나와 내 친구들은 보통 30만원부터 시작하는 월세를 낸다. 이들은 더 좋은 집에서 살만한 돈이 없는 사람들이다. 반지하 사는 사람들 중 월평균소득이 100만 이하인 최저소득가구가 40%에 해당했다. (2005년 국토해양부 연구보고서)

2)

반지하 공간에 대한 존의 활동과 주거권 관련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바는 적음. 1가구 1주택 운동 등 선거 시기 집중적인 정책대응 활동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서 다양한 ‘얘기’의 가시화를 통해 일상적인 주거권 운동을 하고자 함.

① 반지하 생활의 실제(주인집에 대응하는 협상력, 변태, 침수)를 공유하고 반지하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소통이 가능한 당사자 운동을 기획함. 지지집단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1인가구 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함.

② 임대차 보호법, 경제특강 등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활동을 함.

○ 임대차 보호법 특강

- 7월 5일(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나루 교육장 임대차보호법 특강(강사: 조혜인 공감 변호사)

혼자 사는 여성들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집과 관련된 분쟁사안(주택관리 및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 월세의 공제 등)에 대한 권리구제와 법적 권한 설명을 듣기. 임대차 보호법상의 권리와 분쟁시 권리보호 방안. 전월세 소득공제 신고하기, 집주인의 보상범위, 확정일자 받기 등 기본적인 법 권리

○ 보습 경제특강

- 10월 25일 화요일 7시 30분

- 장소:민우회 교육장(강사: 박미정 여성미래 재무상담센터 상담팀장)

저임금노동자, 카드값지출로 월급을 소진하는 사람, 보증금은 줄고 지출만 늘어나는 사람, 공과금 체납자, 가난해서 위축되는 사람들을 위한 경제 특강

③ 정부정책에 대한 개입과 주장

-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에 대한 점검 등 관 대응 액션
- 정보공개청구: 반지하보조금으로 정보공개 청구
- 풍수피해: 완벽해 보이는 서울시, 각 구청의 방재대책을 모아보고, 대응책 작동을 감시하고 이에 관한 성명발표
- ④ 주거권 운동, 독립생활자 운동, 복지의 다각화(1인 가구, 여성주의적 개입) 등으로 확장코자함.
- 궁극적으로 여성세입자조합과 같은 형태의 공동체, 정치성, 조직력을 갖춘 운동을 구상함.

3)

- 5월 9일 1차 모임이후 조직화의 어려움(5명 현재 온라인 18명 오프라인 **명) .
- : ‘반지하에 산다’여성’이다가 지나치게 좁은 범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평가
- : ‘반지하에 산다’는 일시적인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이사를 가면 되는 문제로 사고함
- : 학생, 환자, 실업 등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일시적인 정체성이나 사유로서의 차별이나 삶의 문제를 가시화하듯 ‘반지하에 산다’도 이러한 연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밀착적인 관계망의 한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거운동, 그러나 대다수의 1인 가구는 ‘여자 혼자 살고 있다’를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음.
- 조직형태의 자율성을 확보 과감한 확장고 연대가 필요함.

장애여성공감

1)

크게 보면 세 가지 차원에서 주거권 관련 활동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여성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주택개조 사업을 2008~2010년 3년 동안 진행했고, 올해는 대청소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장애여성들의 욕구에 맞는 지원이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이

기도 하고, 이런 사업의 경우 회원들이 아닌 다양한 장애여성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집을 방문하면서 장애여성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고민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담론과 정책 관련하여 2009년에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동거인이 있는, 전국의 성인 지체장애여성 대상으로 약 200여 케이스를 조사하였으며 이 내용으로 자료집을 만들고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여성들이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얼마나 결정권을 갖는지, 자신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사생활을 확보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진행했던 조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로그램 형태로 장애여성 참여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장애여성 독립생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독립을 하고 싶거나 독립을 한지 얼마 안 되는 장애여성들이 독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독립에 대한 힘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작년과 올해 특히 주거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었습니다. 장애여성들이 독립을 하려고 해도 왜 집이 없는지, 주거를 왜 권리로서 이야기해야 하는지,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인지,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어디인지 등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2)

장애여성공감에서 주거와 관련된 고민들을 조금씩 해오긴 했지만 장애여성 독립생활센터 [숨]이 생긴 이후에 주거 관련 활동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2008년에 장애여성주택개조를 시작하면서 주거권 관련해서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I센터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독립생활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독립의 세 가지 필수조건으로 활동보조, 주거, 소득보장에 대한 요구들을 이야기해왔습니다. 특히 독립과 주거 문제는 매우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탈시설 운동과 함께 장애인 주거권 운동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숨]센터도 장애여성들의 독립을 고민하고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다 보니 ‘집’을 둘러싼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장애인 주거권 운동이 물리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숨]센터는 그것뿐만 아니라 공간 안에서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 주거

가 위치해 있는 지역의 문제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3)

장애인 주거권의 흐름 안에서도 장애인 주거 문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숨]센터의 문제의식에 크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물론, 시설이나 집에서 나오려고 해도 일단 집이 없는 것이 너무도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장 살 집’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와 닿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이 시설이나 집에서 독립하려고 할 때 주거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고민들과 담론들로 확장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촌민회

청년, 우리들의 공간의 의미

안녕하세요. 신촌민회입니다. 소수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워크숍에 참석하여 신촌민회에서 했던 활동들을 소개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신촌민회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고 두 번째로는 청년이 소수자인지 확산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기간 청년 주거권에 대해 고민하긴 했지만 법제도와 정책이 아닌 청년의 주거 문화 위주로 고민의 방향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 모임을 통하여 소수자의 주거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신촌민회도 소수자의 권익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틈새모임의 의도와는 다르더라도 신촌민회에서 했던 활동들을 짧게나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권 관련 활동을 했던 것 혹은 고민이나 구상

우선 신촌민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신촌민회는 관계가 살아있는 마을을 만들고자하는 모임입니다. 나아가 그 관계망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마을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고민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고민합니다. 구청활동과 관계된 주민공청회를 열고 마을 축제나 소규모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며, 지난 6~8월은 지역에너지 문제를 다루었고 지금은 신촌지역의 새 문화 형성과 상권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대학생들과 함께 모색하는 중입니다.

위와 같이 지역에 필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신촌민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청년의 주거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청년의 주거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은 2010년 말 전세대란에 이어 3월 입학시즌부터 시작된 대학가 집구하기 대란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또한 3월 초 마을음악회를 열면서 도시지역 원룸촌의 심각한 단절성을 확인한 것도 주거문제를 고민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의 주거권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90%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 특히 도시로 몰리는 상황을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청년 주거권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사람대접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너무 급진적이고 우리네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도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책적으로 볼 때엔 부실한 1인 가구 정책으로 정작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은 시장의 흐름에 휩쓸려 고스란히 전월세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전세대란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원룸의 수요로 고시원조차 덩달아 시세가 올라 청년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주거권의 문제가 생소한 개념이라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어려움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공동주거라는 주거형태의 변화로 대안을 모색해 보지만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감수해야할 불편이 많아 진다는 것이 경험한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였습니다. 입시지옥을 거쳐 대학

에 들어가면 대학등록금과 집세에 시달리고, 그렇다고 졸업해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청년들이 새삼 가없는 사회적약자, 소수자로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막함을 느끼면서도 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것은 청년의 주거문제는 그저 물리적인 공간의 독립이 아닌 개인의 정체성이나 삶의 방향과 연결되고 성인이 되는 20대에 자신이 삶의 주체로 서기위해서 청년의 주거권은 꼭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신촌민회는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주변 원룸촌의 지역조사를 하였습니다. 알맞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50가지가 넘는 조항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조사를 하였고, 생각만 했던 것과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것과의 차이는 참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 중 예상과 많이 달라 우리를 놀라게 했던 사실은 원룸에 사는 80%가 넘는 학생들이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를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청년의 주거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구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원룸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관계성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고시원은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사회는 고립과 단절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촌민회에서는 공간과 구조가 의식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의도적으로 서로 마주하는 자리를 만들어보기로 합니다.

전월세의 문제, 또 제도나 정책적인 문제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라 뒤로 미루고 신촌민회는 같은 동네 사는 사람끼리 얼굴도 보고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도 나누어보자는 취지에서 원룸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들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시민의식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원룸축제에서는 벼룩시장과 주점을 열고 지역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에 참여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적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금의 청년세대는 사회가 원룸에 익숙한 세대로 자라도록 만들었다
- 24시간 중 외로움은 1시간 동안 느낀다고 해서 사람들이 24시간을 다 공동주거를 하는 것을 원할까?
- 혼자 사시는 분들, 주변 가난한 친구들에게 집을 개방하십시오!!
- 건물옥상 개방운동도 하고 옥상을 만남의 광장으로 꾸미면 어떨까?
- 열린 공간 보다는 용기가 중요한 것 같다.

청년의 주거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생긴 도미노 현상입니다. 따라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근본적인 대안과 의식변화 없이는 해결하기가 요원합니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관계성으로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어쩌면 청년들의 외로움에서 희망을 보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출간되는 많은 책들이 청년들에게 연대를 요구하듯 주거의 문제도 연대하여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대 문화의 시발점으로 원룸촌 곳곳에 부담 없이 앉았다 갈 수 있는 쉼터와 공동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동네 카페 연대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촌민회와 함께하는 마을카페 체화당이 어떻게 하면 만남의 공간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덧붙임: 향후 해보고 싶은 활동

청년 귀농운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도시의 1인 가구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시골의 극단적인 고령화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도 에너지, 환경, 복지, 식량 자급 등 총체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유니온

1)

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 창립한 이후 청년들의 주거권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정기총회에서 2011년에 새롭게 진행할 사업으로 선정하

고 초보적인 고민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전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인 나영정 연구원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유니온 자체적으로 ‘청년주거권 작당모의’라는 팀을 꾸려서 청년주거상황에 대한 르포취재를 자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과 함께 청년주거현황에 대한 중간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주거권 작당모의 팀에서 청년들의 주거현황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활동을 해보면서 만난 청년들의 다수가 주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용과 주거가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고 조합원들의 주거안정 문제, 그리고 청년층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고민했습니다.

3)

일단 청년층의 주거현황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가 거의 전무합니다. 대부분이 주택시장에 대한 자료들이고 청년들이 월세나 전세에 있는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방의 개수가 평수 등까지도 연령별로 정리된 데이터가 전무합니다. 청년유니온은 일단 청년층 주거현황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청년주거실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작업 이후에 구체적인 이슈를 설정하고 싸움을 진행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

그 동안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서 ‘주거권’이라는 이름으로 꾸려온 활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레즈비언의 가족구성권과 관련한 활동들을 해오면서, 원가

족과의 갈등을 토로하거나 파트너와 함께 살기를 고민하는 내담 사례들의 상담을 고민하면서, 침대 컴퓨터 방문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상담소 활동가들이 서로의 생활을 나누면서, 성/성별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집’과 ‘가족’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모습으로 얽혀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성별정체성과의 고민이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부대낌으로 나타난다는 것과 관련하여, 혈연가족 또는 양육된 가정이 레즈비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2009년의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회원들이 생각하는 가족, 가족구성권>이라는 설문 결과의 결과를 보면, 원가족에 대한 ‘애증의 관계’라든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든가, ‘서로 위한다고는 하지만 서로 구속하게 되는 관계’라든가 하는 표현들에서 원가족과 얽혀있는 복잡한 감정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원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회원들 중에서는 정체성을 감춰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대답한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내담 사례 중에서는 원가족 내의 폭력에 대한 내용을 종종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원가족 내에서 커밍아웃 혹은 아웃팅으로 성/성별정체성이 드러났을 때, 내담자들은 원가족으로부터 이반 친구들 및 애인과의 만남을 차단당하거나, 핸드폰과 인터넷 사용을 금지당하기도 하고, 신체적인 구타를 당하기도 하며, 호모포비아적인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에 강제로 내맡겨지기도 합니다. 이반 커뮤니티와의 강제적인 단절과 성/성별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는 상황은, 내담자에게 물리적인/정신적인 고립의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상담소에서는 이러한 내담자들에게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원가족에서 독립할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하지만, 여러 모로 쉽지 않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집’이라는 공간이, 레즈비언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에 쓴 것처럼 침대 이반들의 적지 않은 수가, 자녀의 동성애자 정체성이 드러난 경우 끊임없는 혐오발언과 감

금, 폭행, 정신병원 입원 등 학대를 일삼고 이성애자로서 살도록 삶을 강요하는 원가족으로부터 벗어나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그간의 상담활동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담소 상담팀에서는 청소년쉼터 실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쉼터와 상담소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07년에 ‘쉼터 방문 프로젝트’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은 상담소 사정으로 마무리 짓지 못했고, 이미 몇 해가 흘러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어서 이 자리에서 나누기에 무리가 있겠지만, 청소년쉼터라는 주거공간과 성/성별정체성을 매개로 한 이야기들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씁니다.

2007년에 상담팀 활동가들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청소년 쉼터 일곱 곳을 방문해서(상담소 활동가들의 방문을 거절했던 쉼터도 있었습니다) 그 곳의 쉼터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질문은 크게 (1)쉼터의 이반 입소 현황, (2)이반 입소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겪는 어려움, (3)이반 청소년들의 퇴소 후 상황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1)쉼터의 이반 입소자 현황은, 십대 여성 이반에게 인기가 많은 쉼터일 경우에는 총인원 25명 중 20명이 이반일 정도로 그 비율이 높았고, 현재 이반 입소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기에는 몰려서 들어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반 입소자들을 아예 받지 않는 쉼터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2)이반 입소자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공동생활을 하는 중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킨십으로 불편을 초래한다고 답하기도 했고, 이반이 아니었던 아이들이 쉼터에서 이반들의 영향을 받아 이반이 되는 것에 대해서(‘물 들인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반 아이들의 교제관계가 얽히면서 ‘피바람’이 분다고도 했습니다. 쉼터에서 이반 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일은 없다는 답변도 들었고, 다른 곳에서는 이반인 것이 쉼터에서 소문이 나서 당사자가 못 견뎌서 다른 쉼터로 연계했다는 답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3)이반 아이들의 퇴소 후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장기 쉼터 또는 그룹홈 형태의 쉼터들은 대체로 종교계열 쉼터거나 대부분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이기 때문에, 이반 아이들의 정체성을 알리고는 연계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비행’ 청소년들과 달리 이반 청소년들은 유난히 부모

들을 만나기 싫어해서 협력하기가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주거권에서 ‘쉽터’라는 공간을 어떻게 위치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십대 쉽터는 자신의 주거를 결정할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를 해결하고, 자립의 기반을 닦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봤을 때, 이 과정에서의 ‘집’과 ‘가족’에 대한 고민, 주거권에 대한 고민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동생활을 해나가는 또래와의 관계의 부대낌, 이 반을 아예 받지 않는 쉽터의 문제, 십대 이반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쉽터 실무자의 막막함 등 십대 여성 이반들과 쉽터라는 공간이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레즈비언이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겪는 여러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은 사실 성/성별정체성이라는 변수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기보다, 비혼 여성과 청년층 1인 가구의 이야기와 많은 부분이 겹칠 것입니다.

결혼이 아닌 다른 이유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게 될 때, 집을 임대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주거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형편에 맞는 주거를 찾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없는 고시원, 옥탑이나 반지하 같은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곳, 주변 교통 등의 환경, 공간의 크기, 방음, 채광 등이 사람이 살기에 쾌적하지 못한 곳들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주거에 대해서는 원가족도, 주거정책도 임시적인 공간으로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레즈비언은 원가족의 조력에도, 주거정책에도 기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파트너와 함께 동거를 시작한다고 해서 크게 나아지지는 못합니다. 동성커플의 경우 가족정책에서도 주거정책에서도 고려대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도의 지원체계 밖에 머물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와 관계를 해소함에 있어서도 그 관계의 해소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법률도 없기 때문에, 집을 포함하여 파트너와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분할하고 상속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상담소로 들어오는 내담 사례들에서도 동성 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집을 포함한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들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성에) 혼인과 혈연 밖의 관계로 이루어진 다른 ‘가족들’의 삶의 모습과 욕구에 대해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운동과 주거권 운동이 함께 펼쳐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은, 혼자 사는 비혼 여성 그리고 동성커플에 대한 이웃들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담소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L커플의 동거이야기’라는 꼭지가 있는데요, “한국의 情문화가 낳은 작은 동네의 빅브라더? 빅시스터!”라는 글에서는 매일 커플의 출퇴근에 한 마디씩 꼭 보태는 동네의 정다운(!) 아주머니들을 ‘빅시스터’들이라고 부르면서, 집을 나설 때마다 이 빅시스터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의 피곤함이 커플에게 갈등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집은 가장 독립적인 공간이면서도, 집 밖을 나서면 (혹은 방음이 안 돼서 윗층, 아래층, 옆집과 사생활을 나눌 수밖에 없는 집이라면) 이웃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러한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그리고 여자 둘이서 함께 하는 사는 것에 대한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집의 소유나 거주 문제를 넘어서서 사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거주할 집을 구하면서도 이런 시선들에 편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로 집을 내놓게 되어서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소에 열쇠를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낯선 사람의 방문에 레즈비언 커플은 자신들이 레즈비언 커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까봐 마음 쓰게 됩니다. 성소수자인 ‘나’ 혹은 동성커플의 생활 공간이 아웃팅된다는 것은, 혐오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합니다.

2)

상담소에서 그동안 ‘가족구성권’이라는 이름에서 해온 활동과 고민들이 ‘주거권’ 운동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구성권의 확장은 저마다의 삶의 맥락에 맞는 주거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성애 혈연 중심의 가족계획과는 다른 가족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혼자 혹은 누구와 함께 살고 또 헤어지는 상황에 대해 적절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살기에 적합한 집을 마련하고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는 것,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부대낌을 해소하는 것 등 가족구성권과 주거권에 대한 맞춤형 고민이 필요합니다.

3)

먼저, 상담소에서 고민하는 주거권이 비혼 여성, 청년층 1인 가구 등의 경험과도 긴밀히 얽혀있기 때문에, 레즈비언/성소수자의 주거권을 어떤 틀로 봐야할지 고민이 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거권 활동이 정책 활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경험으로 짐작하고는 있지만, 실태 및 사례 조사들이 앞으로 어떤 틀로 이루어져야 할 지 고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거권 활동은 주거정책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담는 운동과도 함께 가야할 것입니다. 상담소의 한 활동가가 미국에서 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곳의 공인중개소 인터넷 홈페이지는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내걸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줬는데요, 이처럼 주거권 활동은 지역/마을의 맥락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담는 활동과 함께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1)

우리 단체는 미혼모 가정의 주거권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거나 활동을 단독으로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미혼모를 둘러싼 차별적 상황은 주거권뿐 아니라 모성권/교육권/노동권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기에 이러한 여러 이슈들과 함께 미혼모의 권리를 알리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틈새모임의 한 연구원에게 미혼모 당사자들을 인터뷰 할 수 있도록 주선한 인연으로 주거권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처음 미혼모 권익활동을 하면서 미혼모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 중 주거의 문제가 얼마나 긴요한 것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아이를 안고 살 곳을 찾아 여기저기 이사 다니다 결국 다시 모자원이라는 복지시설을 찾아 들어가는 엄마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미혼

모에 대한 편견으로 - “엄마 될 자격이 없는”,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지가 멀쩡한데 일 안하고 지원에 의존하려는” - 임대주택 자격을 따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3)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임대주택의 미혼모 가정에 대한 불리한 점수제 시정 (나이가 많을수록, 한 지역에 오래 살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은 수록 점수를 받는 기준은 미혼모 가정 - 주로 살던 곳을 떠나고 20-30대의 젊은 나이에 아이 하나 정도를 키우는-이 높은 점수를 딸 수 없는 장애요인이 된다), 전세자금 대출제도 등이 도입된다면 미혼모 가정의 주거가 좀 더 보장받게 될 것 같습니다.